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성폭력 고소과정에서의
어머니의 고통스런 '말하기'에 관한 연구

여 성 학 과
정 명 희
200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성폭력 고소과정에서의
어머니의 고통스런 '말하기'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월

여 성 학 과

정 명 희

2004

아동성폭력 고소과정에서의
어머니의 고통스런 '말하기'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 성 학 과 정 명 회

정 명 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김 은 실	_____
심사위원	이 재 경	_____
	허 라 금	_____
	김 은 실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논문개요	3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과 연구 참여자의 특성	6
3. 어머니의 '고통'과 연구자의 성찰성	12
II. 이론적 배경	15
1. 가부장제와 어머니	15
2. 말하기의 정치성	19
III. 공적 영역에서의 말하기의 어려움	21
1. 고소과정에서의 말하기	22
1-1. 법언어가 통제하는 '고통'	27
1-2. 어머니의 말과 법적 언어의 경합	32
1-3. 성인남성의 언어에서 배제되는 아동의 피해경험	37
2. '말하기'의 사회적 효과	41
2-1. 가부장제의 어머니에서 여성/어머니로의 경험	44
2-2. 남성언어에 패배하는 여성/어머니의 말하기	47
IV. 피해자의 고통이 배제된 '성폭력'	51
1. 폭력적 욕망으로만 해석되는 성폭력	52
1-1. 고통의 언어 와 폭력적 욕망의 언어	56
1-2. '고통'으로 말하기	60
2. 여성적 욕망이 거부되는 고통	64
3. 낙인의 부메랑 효과	69

V. 고소과정에서 전환되는 어머니의 의식	73
1. 살아있는 딸의 존재를 명명하는 여성/어머니의 시선	73
1-1. 상처로서의 '낙인'에 대한 비판	74
1-2. '타락'에 대한 염려	79
2. 새로운 어머니의 의미	82
2-1.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된 모녀관계	82
2-2. 대항적 모성 ; 딸의 어머니	84
V. 결론 및 제언	88
참고 문헌	92

ABSTRACT

<표 차례>

<표 1> 딸의 성폭력을 고소한 어머니들.....	9
<표 2>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에 개입한 사람들.....	9
<표 3> 기타 보조사례.....	10
<표 4> 고소·고발을 설명하는 도표.....	40
<표-5> 국내 범조인 성, 직업별 분포 현황.....	43
<표 6> 범죄 유형별 및 형량.....	58
<표 7> 성폭력을 설명하는 표현들.....	98

논문개요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자의건 타의건 가부장제를 재생산해오던 어머니가 딸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모성으로 변화해 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딸의 성폭력 피해를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건화하였다. 고소과정에서 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행위는 주로 '피해를 말하'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의 피해를 말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여러 단층의 고통을 안겨 준다.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추고 수사기관의 법 집행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성폭력을 설명하는 여성언어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당혹해한다. 그리고 아동성폭력을 다룰 수 있는 제도나 전문가가 부재하여 아동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발견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수사과정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법의 가부장성이다. 고소하기 전까지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남성중심적인지 몰랐다고 토로하는 어머니는 법과의 대면 속에서 법 집행자들의 성인남성중심성이라는 문제에 맞부딪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어머니의 진술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고소과정을 통해 법의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성을 인식하게 된다. 아동성폭력에서 여자아동의 사회관계와 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있다는 것을 어머니들은 지적한다. 또한 근친성폭력 사건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법을 비판함으로써 법의 가부장성을 비판한다.

둘째, 어머니는 성폭력에 관한 언어들이 딸과 어머니의 피해를 설명할 수

없음에 대해 고통을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어머니는 법이 자신이 말하는 성폭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는 남성의 언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셋째, 어머니는 고소과정을 통해 여성을 순결한 몸과 오염된 몸으로 나누는 이분법의 경계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어머니는 성폭력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자신의 생활을 잘해나가고 있는 딸의 존재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여성의 몸을 이분화하는 순결이란 경계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자신의 딸의 삶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넷째, 어머니는 성폭력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 법과 대면하면서 자신이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여성/어머니로서 의심받고 여성/어머니로서 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고소과정을 통해 법과의 투쟁 속에서 저항적인 모성 경험을 수행한 딸의 어머니는 딸의 어머니 이면서 동시에 동시대를 함께 사는 딸의 동지인 자신을 경험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어머니라는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I. 서론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아동성폭력¹⁾ 사건의 고소과정에서, 어머니가 딸을 대리하여 피해를 말하는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서 가부장제의 성적 통제에 공모하는 모성에서 성적 억압을 비판하는 저항적인 모성으로 변화하는 '여성/어머니'²⁾의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사회는 부계 중심의 가족이 사회의 단위를 이루는 가부장제 사회이다. 우리 사회의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 안에서 어머니는 딸과 아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의 교육을 실천해왔다. 딸에게는 '가부장적 사고를 자연스런 여성의 본성으로 내재화'하게 하는 것이고, 아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에 주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딸에게 내재화된 가부장적 사고는 아들의 사회적 이해관계와 양립된다. 남성중심의 사회적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 어머니는 딸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아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³⁾

그러나 부계 중심의 가족 내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아들과의 관계보다 더 정서적이고 친밀한 것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모녀관계의 '친밀함'은

- 1) 아동성폭력이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다. 아동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또래의 친구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법적인 시비를 가려야 할 경우, 피해 아동은 단독으로 고소할 수 없다. 아동이 입은 피해의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다. 이 때 부모나 그의 대리인이 함께 공동 고소인 자격을 가질 때 고소가 성립된다. 고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아동성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주로 부모(특히 어머니)가 된다.
- 2) 고소를 위해 공적인 영역에 나온 어머니가, 법의 수행자들에 의해 어머니가 아닌 여성으로 치환되는 순간이 있다. 어머니의 말하기는 '여성의 말하기'이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언어가 소용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남성 중심 사회에 비판적 의식을 갖는 어머니는 여성/어머니로 정체화(identified)하게 된다.
- 3)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가족이나 친족구조 속에서 남자와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것을 남성 중심으로 사고해 온 여성들은 그런 가부장적 사고를 자연스런 여성의 본성으로 내재화하여 남성의 눈으로 자신과 주변의 여성들을 단속하는 자기소외와 집단적인 감시 체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어머니들은 딸들을 다잡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와 올케를 단도리하고 이웃집 여자는 다른 집 여자를 닮았다. 아버지이자 오빠이며 남편이자 애인인 남자들의 성공과 편의를 위해서 이처럼 여자들은 '여성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움아맨다(임옥희, 2000).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 세대에 걸쳐 여성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과 연대의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길리건, 1982). 하지만 모녀의 친밀함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아드리안 리치는 여성억압적인 부계중심의 가족 내에서 여성의 제도적 모성의 측면을 비판한다. "가부장제에서 대중적인 자녀 양육은 단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의 경제나 전쟁 동안에 많은 수의 여성을 노동력으로 유입하려는 것과 미래의 시민을 세뇌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수세기 동안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역사에서도 대부분의 아들이 가장 진지한 의미에서 실제로는 아버지가 없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가부장제는 지속되었다(아드리안 리치, 1996)." 그렇다면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들의 어머니가 딸과 유지하는 관계는 친밀함만으로 해석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어머니들이 딸을 학대하여 왔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 시기부터 80년대 초까지 불리어졌던 소위 '공순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이름이다. 그러나 그 공순이는 누구인가? 개별적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한 그녀들은 어머니의 '딸'이며 그 어머니가 아끼는 아들(주로 맏아들)의 '누나 혹은 누이'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순이로서의 딸이 그 세파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친밀한 모녀관계에 기반한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과 이해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딸은 강제된 동의를 통하여 아들의 어머니 역할에 조력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가인구조절책으로서의 여아낙태, 여아의 매매, 일본군위안부, 가난한 시기에 민며느리, 딸을 노비로 팔기,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심리적인 학대 등 가족 내에서 딸에 대한 폭력은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소위 사적인 영역이라고 불리는 가족 내에서 딸에 대한 폭력은, 고통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이라는 측면만 부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친족구조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모녀관계를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어져 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적인 모녀관계⁵⁾는 논의되

- 4) 당시 딸들은 대도시로 올라와 대규모의 공장과 마찌코바, 버스, 다방, 기지촌 등에서 자신의 가부장제 가족을 유지, 존속시키는 남자형제의 뒷바라지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 했다. 그녀들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성폭력이 있었고, 임금체불과 노동착취가 병행되었다.
- 5)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아들의 어머니 실천하는 모성, 혼자서 딸을 키우며 그 딸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환원시켜버리는 혼자된 어머니, 아버지 혹은 자신의 애인과의 관계를 위해 딸의 강간이나

지 않았다. 오히려 가부장제 폭력에 패배한 어머니의 고통을 딸은 이해해야 했다. 이것은 모성이 여성에 의해 이야기된다 해도 여전히 그 근본적인 문제, 가부장제를 세습시키는 어머니역할에 대해 도전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판 지점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모성에 대한 논의는 여성주의 진영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되어져 왔다. 가부장제 모성 비판에 대한 시론이라 볼 수 있는 가부장제 모성이테올로기의 비판(박성숙, 1986), 여성의 자기발전의 욕구와 좋은 엄마의 양립가능성을 보여주고 새로운 모성상을 제안한 연구(신경아, 1998), 2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역사를 통해 모성담론의 시기별 위상을 정리하여 모성의 사회성을 주장한 연구(문소정, 1997),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양체제의 시대적 변화와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모성의 지형과 역사성에 대한 연구(이재경, 윤택림, 한영희), 한국에서의 사회적 상황에 따른 모녀관계의 역동성을 여성의 생애사를 단계별로 나누어 나타낸 연구(박신규, 1992), 모성의 사회적 확장을 '교육운동'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험을 통해 보려한 논문(이경아, 2000)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제도적 모성이 실제 여성의 경험에서 논의되지 않음을 비판하고 여성의 개별 경험을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모성을 담론화 해냈다는 의미가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은 사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가족 내의 재생산에서 공적인 영역인 생산의 영역으로 여성의 정체성의 확장을 의미한다. 공·사를 잇는 여성의 경험은 공·사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성을 한정된 영역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지배 담론에 불과했음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논문들에서 논의의 초점은 가족의 영역에서 발현되는 여성들의 모성 실천을 연구함으로써 모성이란 추상적 개념이며, 생물학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밝히는데 있다. 그 결과 이 논의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개별 여성들의 모성의 역동성과 다양한 실천을 이야기함으로써 발전적인 모성의 미래상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들이 이야기 하는 모성과 어머니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가부장제 양육의 환경인 가족 내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이 연구들에

성적 폭행을 묵인하는 어머니에 대한 딸의 고통과 분노는 이야기되지 않았다.

서 모성은 사적으로 치부되는 가족 내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서의 '제도적 모성'(리치, 1996)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만, 가부장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공적인 장에서의 모성 출현은 전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제도적인 영역, 공적인 담론의 장, 법적인 공방의 장에서 어린 딸을 대신하여 가부장제의 성폭력을 정치화하는 어머니들을 발견했다. 이들은 딸의 성폭력 피해를 사적인 가족의 영역에 묻어두지 않고 범죄에 대한 고소라는 공적인 장으로 가져간 어머니들이다.

현재까지 딸의 성폭력 사건에서 어머니의 실천으로서의 모성은 적극적으로 담론화 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는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문제였고, 성폭력 사건에서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묵인하는 존재였다. 최근의 '아동성폭력'사건들에 대한 보도는 피해자인 아동이 받은 상처의 심각성을 드러내거나 아동성폭력 수사의 비전문성을 비판했을 뿐이며 어머니의 행위성이 가지는 의미를 주제로 한 경우는 없었다. 이 보도들은 단지 사건의 진의 여부를 둘러싼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방과 사건화 과정을 설명할 뿐이며, 이러한 보도에서 어머니의 '모성'의 역동성과 정치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난 뒤 시청자들은 딸을 단속하지 못하여 혼전의 순결을 잃게 만든 어머니의 고통이나 폭력으로 오염된 모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보도에서는 고소 과정에 나선 어머니의 '모성'의 정치성을 읽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모녀는 생존자가 아니라 피해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보여 지는 것이다.

여성억압적인 사회에서 성폭력은 남성의 주요한 여성 통제 기술이다

6) 10년 전, 가족 내 아동 성학대 사건으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전관·보은 사건'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지어졌다. "사건의 전말과 일련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분노와 당혹감을 느끼며 퇴폐적인 성문화·병적인 아버지-무책임한 어머니-희생자인 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퇴폐적인 성문화의 퇴치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의 시급함을 역설하는 차원에서 이 '예외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마무리 지었다" 조주현, 2000,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7) * 「문화일보」, 2003, 성폭행 아동 '전술 비디오' 큰 효과, 8월23일. - (그러나 이 효과는 구속에 관한 것이지 기소에 관한 것이 아니다)
* 그것이 알고 싶다, 2003, "법이란 이름의 폭력- 성폭행 피해 아동의 인권침해", SBS 텔레비전, 3월22일
* KBS 8뉴스, 2003, "아버지가 수양딸 6세부터 성추행", SBS 텔레비전, 8월30일.

(Mackinnon, 1989). 만일 어머니가 아들의 어머니로 남아 있고자 한다면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담론화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딸의 성폭력 피해를 공적인 영역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행위성은 근본적으로 가부장제에 저항적이다.

딸의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는 어머니의 행위는 기존에 논의되던 모성과는 다른 방식의 모성 실천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모성은 가부장제의 원동력으로서의 성적 통제와 성별 불평등의 사회적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의 성폭력을 정치적 장에서 문제제기하기 시작하는 어머니는 딸에게 가학하는 가부장제 권력에 도전하는 모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공적인 언어의 장인 법정에 사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백 번 후회 한다'고 말하지만 공적인 제도의 장에서 '고통'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가부장제 사회에 저항하는 모성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말하기'에 의해 '모든 피해자'가 모두 '생존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 장에서의 '말하기'라는 모성의 실천을 통해 어머니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구체적인 장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머니 자신의 고통을 '남성의 욕망'으로 말하지 않고 '딸의 어머니'의 고통으로 느끼는 생존자의 '말하기' 효과에 관한 것이다. 어머니가 성폭력에 의해 상처 입은 딸을 '생존'하는 것으로 말할 때 딸은 상처 속에서만 묶여있지 않고 자신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갖을 수 있다. 어머니가 딸의 어머니로서 입장을 가지고 가부장제에 대항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여성의 대항문화의 주축이 세워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성담론을 일차적으로 전수하는 어머니가 여성억압의 핵심인 성폭력을 문제화하여 스스로 대항담론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둘째는 성폭력에 대한 공적인 영역에서의 '말하기'를 폭력과 피해로써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고통'으로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여성언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적인 언어의 장인 고소과정에서 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부장제 성적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구성해 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어머니가 딸의 피해에 직면하여 어떤 '고통'에 직면하는가, 그리고 '고통'을 통해 어머니가 직시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딸의 성폭력의 피해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말하기'의 주체로서 어머니는 가부장제 제도에서 어떠한 '고통'에 직면하는가?
2. 고소 과정의 '고통'을 통해 어머니들은 남성중심의 이성애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되는가?
3. 가부장제의 성폭력을 문제시하는 모성은 '개인적(individual)'인데, 조직화되어지지 않은 어머니가 성폭력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2. 연구방법과 연구 참여자의 특성

가정관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등을 중심으로 (아동)성폭력을 다루어 온 기존의 연구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 후유증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폭력과 피해에 관한 연구들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폭력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피해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이 폭력에 맞서고자 (상당이나 고소와 같은) 했던 행위의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역동성이 남성중심의 사회에 대한 대항문화로 담론화 되어지지 못하고 단지 몇몇 예외적인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그 역동성'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고소과정에서의 어머니의 행위성을 '그 역동성'으로 전제하고, 이를 보기 위해서는 고소과정에 있거나

고소가 계류 중인 사건의 당사자들과의 심층인터뷰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섭외가 용이하지 않았고, 연구 참여자와 만났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자가 잘 수행해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자는 '아동성폭력피해자부모모임'(이하 '부모모임')을 찾아 자원 활동을 시작했다. 자원 활동의 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 2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자원 활동의 첫 한 달간은 '부모모임'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움'9))을 지원하느라 일주일에 2-3회 정도 사무실 업무를 보조했고, 나머지 기간은 부모모임의 행사나 활동이 있을 경우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사무실에서의 활동은 단체에서의 자원 활동가들의 잡무지원과 같은 성격의 것이었고, 피해자상담이 있을 경우 아이를 돌보거나 '부모모임'대표의 상담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연구자가 합류했던 '부모모임'의 활동은 아동성폭력사건의 재판 경과를 직접 수집하는 일, 구속 수사 중인 범죄자를 보석처리 한 판사에 항의 방문,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문 제출 방문, 피해자 병원 방문 시 안내하기 등에서 '부모모임'의 어머니들과 함께 움직이고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참여관찰에서 연구자는 어머니들이 느끼는 분노와 낙인에 대한 수치심 뿐 아니라 고소과정 중에 혹은 사건을 사회적으로 문제화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주체로서의 의지 등을 읽어낼 수 있었다. 자원 활동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더 절실히 느끼고 연구를 결심한 후, '부모모임' 대표의 지원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2003년 4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소과정을 이미 마치고 판결을 받은 상태이거나, 고소과정(계류 중인 것도 포함한다)에 있는 어머니들이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에 따라 '부모모임'

8) 이 모임은 지난 2001년 10월 당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부모'들이 약 10집 정도의 피해가족 부모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이 모임은 다른 여성단체와는 달리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아동'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피해의 치료와 재판과정에 관한 정보를 지원, 공유하고 있다. 이 모임의 최대 가치는 아동의 치료에 있다.

9) '아동성폭력피해자가족모임' 주최로 열린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움'은 2002년 10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사무실, 참여자들의 집, 음식점, 공원 등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녹취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녹음을 원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가 필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딸의 성폭력을 고소한 어머니들

구분	나이	직업	사건 당시 아동의 연령/ 재판과정
A	40대	주부	10대/ 유죄
B	40대	노동자	10대/ 유죄
C	30대	자영업	10세 미만/ 계류중
D	40대	노동자	10대/ 계류중
E	30대	노동자	10세 미만/ 계류중
F	40대	자영업	10세 미만/ 형사유죄, 현 민사배상받음
G	30대	주부	10대/ 계류중
H	40대	자영업	10대/유죄

<표-2>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에 개입한 사람들

구분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직업
가	아버지	40대	자영업
나	친척	40대	노동자
다	이웃	30대	주부
라	이웃	40대	주부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본 연구의 성격상 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장치가 요구되어 가장 포괄적인 범위로서 직업과 나이 등을 표기하였다. 직업의 분류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는 전일제 노동의 경우 노동자로 표기하였고,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거나,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의 노동의 경우도 자영업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 아동의 성폭력 피해의 정도가 강간이거나 친부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상황일 경우 구분을 무시하고 각각 다른 사례라 할지라도 사례X로 표기하였다.

<표-3> 기타 보조사례

구분	직업	나이	비고
갑	경찰관	30대	위의 한 사례와 관련한 어린이성폭력 수사
을	상담원	20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마지막으로 인터뷰 이외에 연구에 이용된 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대표적인 공적인 언어의 장인 고소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누구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통계를 찾고자 했다. 그 통계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사실의 신고 수, 고소의 성립과 기소의 수, 범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찾을 수가 없었다.

논문에서 통계가 갖는 의미는 그것의 공식적인 신뢰감 때문인데, 이런 이유와 더불어 연구자가 이 통계를 찾고자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성폭력의 신고의 수는 그 사회의 성과 연관된 아동의 인권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성폭력 고소와 형의 확정은 그 사회가 얼마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

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와 관련된 국내의 거의 모든 국가적 공식기관 홈페이지, 국회전자도서관 등을 검색했으나 이와 관련한 통계를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전화 통화를 시도한 끝에 경찰청 본청 여성계에 마지막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도 그런 통계는 없다.' 라는 대단히 단호하고 분명하고 당당한 담당자의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이 '경찰청의 공식입장이'라는 것 이었다¹⁰⁾.

연구자가 찾을 수 있었던 국가의 공식적인 성폭력범죄 통계는 경찰청의 '범죄백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명단'(이하 신상공개명단)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 통계는 범죄자로서의 성폭력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생존자로서의 피해자의 통계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실제 신고자의 수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해 여전히 신고율 2%라는 숫자에 가려져 피해자의 범죄 처벌 의지와 행위성을 볼 수 없다. (청보위의 신상공개명단은 범죄자의 죄목과 피해자의 사함이 기입되어 있어 신고 피해자의 수는 직접 세어볼 수 있었다. 신상공개명단에서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을 시도한 피해자의 수가 4차와 5차 각각 200명이 넘고 있다.)

또 다른 성폭력의 사건 관리 문제 중 하나는 요즘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형사법상 미성년자인 만13세 미만의 가해자에 관한 사후 법적 조치와 관리의 문제이다. 현재 만13세 미만의 가해자는 형사법상 처벌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령의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주로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명단 보도자료(청보위, 2003)'임을 밝힌다.

10) 또한 인터넷에 올라온 '경향신문' 2003년 7월 27일자 기사는 "경찰 범죄통계 주먹구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http://news.media.daum.net/>). 이와 같이 성폭력 사건의 초기 수사기관인 경찰청의 사건 통계 관리는 그 비전문성에 관한 비판과 자료로서의 신뢰성 차원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어머니의 '고통'과 연구자의 성찰성

연구자가 딸의 성폭력을 법적 처리하는(혹은 처리한) 어머니들에게서 보았던 상처는 다층적인 고통이었다. 평생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 같은 분노, 슬픔, 가슴앓이, 몸에 나타나는 물리적 통증이 어머니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통들은 고소에서 처벌까지의 '고소과정'과 고소과정이 이후에 다양한 감정과 행위로 모습을 바꿔가며 어머니들의 생활에 함께 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측면에서는 통증이고 어느 측면에서 교훈이며 또 어느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의식의 토대와 선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인터뷰 시에 참여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사건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제 관심 사안이 아니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고소 과정을 통해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연구자가 공적인 영역에서 어머니들이 고통을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는 다음의 이유가 있다. 첫째, 고소과정이 마무리가 되어도 끝나지 않는 것은 '딸의 어머니'로서 갖는 '고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분노라는 감정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과정이 마무리되면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통'은 사례에서 어머니가 말하듯이 '그 애와 내가 같이 가져가야 할 숙제'로서 어머니의 딸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성폭력은 성폭력이다. 고소과정에서 성폭력을 증언할 때 수사기관은 법적 형식에 맞춰 남성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피해자에게 강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언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외상을 제외한 폭력의 피해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여성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터뷰 과정 중에 연구자가 발견한 것은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어머니들이 고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하나는 고소과정에서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상처와 관련된 것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 연구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고소를 할 수 없었던 몇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고소과정을 겪은 어머니들은 고소하지 못한 어머니들보다 딸의 상처를 상당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태도는 딸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다. 어머니들은 고소과정에서 가해자를 원하는 만큼 벌주지 못했지만, 아이는 남성 중심의 이성애 사회에서 남성의 성이 문제적이라는 '알았을'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아이에게 '비판적인 읽기'가 주어진 것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들 역시 고소과정에서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성에 대해 비판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고소과정에서의 고통의 가장 큰 이유가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의 말은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의 아이의 말에 대한 설명에도 고개만 가우뚱거린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딸과 자신이 받은 피해를 모두 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겠지만, 최소한 어머니들이 고소장에 적은 증거(말)는 말이 된다고 해야 한다.

연구자는 그 말을 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들이 '법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사실로서의 고통'은 고소과정 이후에 자신과 딸의 고통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태도로 보아서는 법이 어머니의 말을 모두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법으로서의 '그'가 어머니로서 '그녀'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고소과정의 '고통'은 고소라는 상황에 위치 지워졌던 어머니들이 법의 남성중심성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갖게 한 토대이다. 즉, 고통스런 법적 공간에서의 경험은 어머니들이 우리 사회의 여성억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법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토대가 된다.

어머니의 말하기가 남성중심적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는 정치적 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고통에 대한 성찰' 때문이다. 연구자는 분석 보다는 어머니가 고통을 말하는 과정을 드러내 보이기를 통해 모성의 인식의 성장을 보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과정을 통해서 연구자가 분석하고 의미지우려 하는 어머니의 경험이 고소라고 하는 상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고소의 과정에서 얼마간의 승리와 급진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들이 이미 상처 입은 주체이며, 장기적인 치유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연구자는 어머니들이 준 지식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받았고, 어머니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어머니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편견이라는 것(리치, 1995)을 확인했다. 여성 주체는 정체되어 있는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여성억압적인 제도에 저항적인 지식을 산출해 내는 주체의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험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연구과정 내내 주변화된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연구자 자신과 관점을 성찰해야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부장제와 어머니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성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하는 가부장제의 억압적 토대로서의 ‘제도’적 모성에 대한 비판적인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나아가 연구에서 분석되는 모성은 아드리안 리치의 ‘잠재적인 관계로서의 모성’이다. 즉, 어머니가 아들/남편의 어머니이기를 거부하고 딸/여성으로 더 붙어 자신과 자매를 보살피는 여성/어머니라는 ‘잠재적 관계로서의 모성’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몸/성통제를 통해 가부장제가 지속된다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내의 맥키넨, 리치 등의 논의 속에서 가부장제와 딸의 어머니에 대해 정의할 것이다.

가부장제는 역사적으로 고정불변의 체제가 아니다. 실비아 윌비는 가부장제가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으며, 20세기의 가부장제는 공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저항과 운동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이해갈등의 결과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시민권, 교육권, 재산소유권, 노동권 등을 허락했다(윌비, 1996; 275, 276).

그러나 시민권 획득이라는 정치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가부장제의 토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통제로서의 성폭력에 있다. 성폭력은 남성이 자신의 정치·사회·문화·경제적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여성의 몸과 정신을 전유하는 폭력행위이며, 이러한 여성의 몸에 대한 성폭력은 남성중심 사회의 원동력이다. 여성은 일상의 경험과 인식에서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서 평가되어진다. “여성이 왜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르게 해석되어 지는가, 남/녀의 질적 분류는 무엇으로 강화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성의 성적대상화에 의해서 이다”(Mackinnon, 1989; 158).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중심의 이성애를 가부장제의 중심적 구조라고 판단한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애 사회에서 욕망¹¹⁾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그

11) 코엣(A. Kooxit)은 ‘질오르가즘의 신화’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오르가즘의 남성중심성과 욕망을

것이 여전히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제도들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모델에 기초하여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재생산양식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가장 기본적인 억압형태로 간주하고 혁명을 위하여 가부장제의 물질적인 기초를 장악해야 한다고 여성들에게 요구한다. (소위키, 158)12).

서구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육체를 통제하고자 시도하는 방법에 관심을 집중시켰다(Tong, 1995; 109). 아드리안 리치는 가부장제가 어머니의 재생산 능력과 정신적 힘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산과의를 장악하고 신화를 남성의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여성에게 남성을 위한 강요된 모성을 실천하도록 했다.(리치, 1995)라고 했다.

모성의 가부장적 구조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간의 관계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며 악화시킨다. 더구나 이것은 남성 지배를 재생산하는 근본적 과정이다. 모성과 관련하여 볼 때, "남성의 지배는 출산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며 흔히 그것은 가부장제라고 한다(엘리슨제거, 1983; 296-297)".

엘리슨 제거가 말하는 '아버지가 지배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아드리안 리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지의 권력은 모든 것에 그리고 그것을 기술하는 언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 권력은 확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구체적이며, 상징적이고 실제적이다. 그것은 보편적인 동시에 보편성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지역에 따라13) (양심, 전통, 내적인 도덕률 등의)

통제하는 이성애 삼일성교 중심의 실천적인 여성억압을 비판했다. "이성은 개인적 욕구를 가진 평등한 성적 행위자가 아니다. 남성의 사회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삶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A. Koedt, 1972, 115).

12) 미셸, 푸코 "정체성 정치와 성적 자유",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13)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력을 약속하는 여성의 내적인 도덕률은 순결 이데올로기이다. 순결이데올로기는 특히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를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억압기제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성규범은 이원적으로 딸과 아들에게 전수된다.

"한국 사회의 성 규범은 단일하기보다는 이중의 논리 체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공식과 비공식체계로 분리된 이중 체계는 상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에 대한 비대칭적인 성통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이중 구조가 존재하는 성통제는 여성에게 더 억압적으로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중 구조 모두에서 남성의 성은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에 반해 여성의 성은 '순결과 정조 개념으로 여성을 평가한다. 순결'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공식, 비공식 체계 모두에서 타락한 여성으로 존중받지 못한다"(장필화, 38-46).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Rich, 1996; 67).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가부장제를 내면화하고 성에 관해 말하지 않도록 하는 성문화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동성의 친구에 의해 문화적으로 세습, 교육14)되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머니는 딸을 여성의 세계에 완전히 입문시키려고 한다.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비는 어머니조차도 그녀를 '진정한 여자'로 만드는 것이 우선 안전하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 사회는 이런 것을 가장 쉽게 받아들여 주기 때문이다(보브와르, 1; 410-411)

가부장제는 어머니를 통해서 일찍이 소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가르치는 구실을 한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자신을 비하시키고 사기를 꺾는 역할에 순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딸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고 해도 "어머니의 보살핌(mothering)"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가부장제 하에서 딸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내면에 강한 자기 성장 의식이 있어야 한다(리치, 1996; 303-304).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여성억압적인 사회에서 딸의 어머니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는 '딸의 어머니'라기 보다 '아들의 어머니'였다. 그렇다면 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리치는 여성들이 어머니를 말할 때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 이해하는 것은 모성이라는 제도가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의 중요한 측면에 대하여 눈 감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리치, 1996; 316).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들은 딸에 비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장받으며 훈육된다.

격려와 보호를 받기 위해 여성들, 영혼의 반려자들, 후원자에게 계속 의존하는 남성은 본질적으로 아들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리치, 1996; 233).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어머니임과 동시에 남편/아들의 어머니이

14) 1998년 5-6월에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남성폭력상담소 제 1기 성교육 강사팀이 성남지역 남, 녀, 남녀공학 중, 고등학교 학생 1810명의 '청소년성의식 실태보고'에 따르면 아이들이 성에 관한 지식의 습득을 성교육과 포르노 그리고 또래집단으로 꼽고 있다. 지난 80년부터 우리 사회의 성교육은 여자 청소년의 순결 교육, 낙태 비디오를 틀어주고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기 등을 중심으로 양호 선생님의 지도로 실시된 바 있다. 21세기에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교육이 정규 교과로 들어와 있지 않다. 이는 아이들(초등, 중, 고등학생 모두)이 포르노나 또래집단의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성에 관한 지식만을 전수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이들이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는 성평등한 전문적인 성교육 강사의 목소리로 전수되는 성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

리치의 논지에서 '딸의 어머니'는 딸에게 "자기 편임을 말과 행동으로 알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위협할 수 있지만, 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침묵 속에서 강간 때문에 괴로워할 때마다, 어머니도 자신의 수위에 한 땀을 더 넣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알게 해주는 태도"를 가진 어머니이다(리치, 1996:311).

예를 들어, 아동으로서의 딸이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 하고 있을 때, 피해 사실을 공적인 영역으로 알리는 것이 위협할 수도 있지만, 딸의 삶을 위해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고소를 단행하는 예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는 가족 내부에서 기존에 자신이 해오던 아들/남편의 어머니에 대해 죽음을 선언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¹⁵⁾.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여성, 자신의 몸을 불결하다거나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여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여성의 육체는 훌륭하고 건강한 삶의 장소라고 딸에게 전수할 것이다. 여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는 여성은 딸에게 자기 비하라는 고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분노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여성은 자신의 딸 안에 있는 분노를 그것이 단지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누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딸을 키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딸로서 우리가 가지기를 혹은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머니로서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깊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신뢰와 다정함을 필요로 한다(리치, 1996:307,306).

그와 더불어 리치가 말하는 어머니는 "우리들 중 누구도 어머니 '혹은' 딸이 아니다. 놀랍게도, 혼란스럽게도, 더욱 복잡하게도, 우리는 둘 다이다. 어머니이건 아니건, 다른 여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여성은, 실제 어머니와 딸 간에 존재하는 동일시가 확산된 유형의 보살핌을 서로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리치, 1996:317).

15) 어머니가 가부장제의 제도가 요구하는 모성을 거부하는 정치적인 행위, 여권운동 등의 실천이 아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이상 어머니가 세상과 연결되는 고리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면서부터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 될 기회를 가진다(253)"고 한다.

아동성폭력에서 딸의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기 위해 법의 공간에 등장한 어머니는 논의한 바대로 딸의 어머니이며 여성/어머니이다. 이 모성의 연구가 갖는 함의는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법을 훈육, 계승하던 어머니가 그 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가졌을 때 갖는 전복적 힘을 갖는 여성의 경험에 페미니스트들의 시선을 모았다는데 있다.

2. 말하기의 정치성

'딸의 어머니'라는 존재는 남성중심의 이성애 사회에서 어떤 방식의 정치적인 의미와 효과를 만들어 내는지, 버틀러의 언어의 수행성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문화적 명료함의 쇠창살은 실제 그리고 이를 지어질 수 있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지어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말하기 행위는 법의 언어로서 수행되어지는 일종의 '모방'이다"(Butler, 1993; imitation). 이러한 말하는 행위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여성은 이성애의 고정된 질서에 의해 단지 여자이거나 어머니이거나 딸이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틀에 박힌 이미지들은 문화에 의해 구속받는다. 이러한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 이외에도 여성들은 존재하고 있다. "이성애적 경계 외부에서 레즈비언으로 존재하거나 나에게 명령된 그 이상 더 많은 것이 되는 것 같다"(Butler, 1993; imitation). 이러한 주체는 '말하는 행위'로 존재한다.

그러나 말하는 주체는 그 주체에 선행하는 말의 수행적 작용, 호명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체이므로 그러한 말하기의 창시자가 아니다. 말하는 주체보다 말하는 행위가 먼저 존재한다(Butler, 1997). 주체는 주체에 대한 구성적인 외부를 산출하는 것이자, 주체 자신의 근거규정적인 것으로서 주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영락된 외부를 산출하는 것이기도 한 배려와 영락의 힘을 통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Butler 2003:25). 여성을 피억압적인 존재로 지속시키는 "젠더적인 수행성은 규제적인 성적 장치들의 강압적이며 반복적인 실행들과 분리된 채 이론화될 수 없으며, 이성애 장치는 성의 '물질성'을 경계구분짓고 이성애적 해계모니의 규범들이기도 한 규제적 규범들의 물질화를 통해(물질화로서)

형성되고 유지된다.(Butler,2003;36).

여성은 이성애적 규범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들이다. 즉 성을 수취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말하는 '내가' 형성되어지게끔 해주는 것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말해질 수 없는 것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말하기는 말하기에 있어서의 합법성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낸다(Butler,2003;24).

여성이 아버지의 법에 대면하고 싸움을 거는 언어는 경계 상의 언어이며, 여성은 언어를 갖지 못했고 말을 하는 주체가 아니며 통치의 영역 내에 있지 않다. 그리고 담론과 통치의 주체도 아닌 여성이 그 언어를 사용하여 권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여성이 수행하는 언어는 국가권력의 파수꾼들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모방하여 수행하는 언어는 일종의 사투리로서, 국가의 법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융합될 수도 없는 [일종의 경계상의 언어이다](Butler,;25-29).

또한 말을 수행하는 여성은 국가의 내적인 악devil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가정의 어떤 역할도 들어맞지 않는 여성으로 등장한다(Butler,;32).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가부장제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딸의 어머니라는 존재는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 내에서 '가부장제 가족의 어느 부분에도 들어맞는' 등장인물이 아니다. 어머니의 등장의 목적은 딸의 성적 피해에 관해 법과 대면하고 따지고 논증하려 드는 말하기 (스피치)를 하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딸의 어머니'의 등장은 경계 혹은 가부장제의 틈새에서 등장한다.

어머니는 자신이 수행해 왔던 가부장제 법에게 '고통'이라는 사투리를 통해 '성폭력'을 스피치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을 말함에 있어 '고통'은 '폭력'의 사투리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은 여성단체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나 남근 중심의 이성애 사회에서 성에 관한 위계질서의 남성적 '폭력'에 의해 구성된다. 왜냐하면 불평등한 이성애 사회에서 성적 욕망 = 남성의 욕망 = 폭력이라는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캐롤 페이트만,1998). 따라서 법의 수행자들은 사투리 혹은 방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어머니는 '고통'에 관해 말함으로써 성폭력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수사기관에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따라서 가부장제 국가는 두 가지의 혼란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존재의 출현 즉 딸의 어머니라는 존재의 출현이고, 다른 하나는 법의 언어에 대한 틈새내기를 실천하는 '고통'이라는 '사투리'의 스피치이다. 딸의 어머니가 갖는 말하기의 정치성은 이러한 가부장제 국가의 법 내부에서 법의 언어로 말하고 있으나 '사투리'의 전술을 이용하여 가부장제 경계를 흔드는 효과에 있다.

III. 공적 영역¹⁶⁾에서의 말하기의 어려움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딸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사적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피해에 관한 사실을 가족 외부의 누군가에게 알리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TV나 신문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 단체에 사건 처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를 말하는 것이다. 상담과 정보수집 과정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때 상담 기관은 주로 전화 상담과 면접 상담을 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아동성폭력피해자부모모임'과 같은 단체들이다. 고소 초기의 상담에서 어머니들의 욕구는 일차적으로는 딸의 치료에 대한 문의와 피해 당사자인 딸에게 닥친 당혹스러운 사건에 대해 어머니로서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상담한다.

고소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들은 제도적 공간이라는 것이 어린 딸의 성폭력을 말할 수 있는 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통제의 장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1. 고소과정에서의 말하기

<표-4>는 '일산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고소 고발 절차'에 관해 설명한 그림 자료이다. 고소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는 대개가 <표-4>의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인터넷의 자료는 딸의 피해를 고소하기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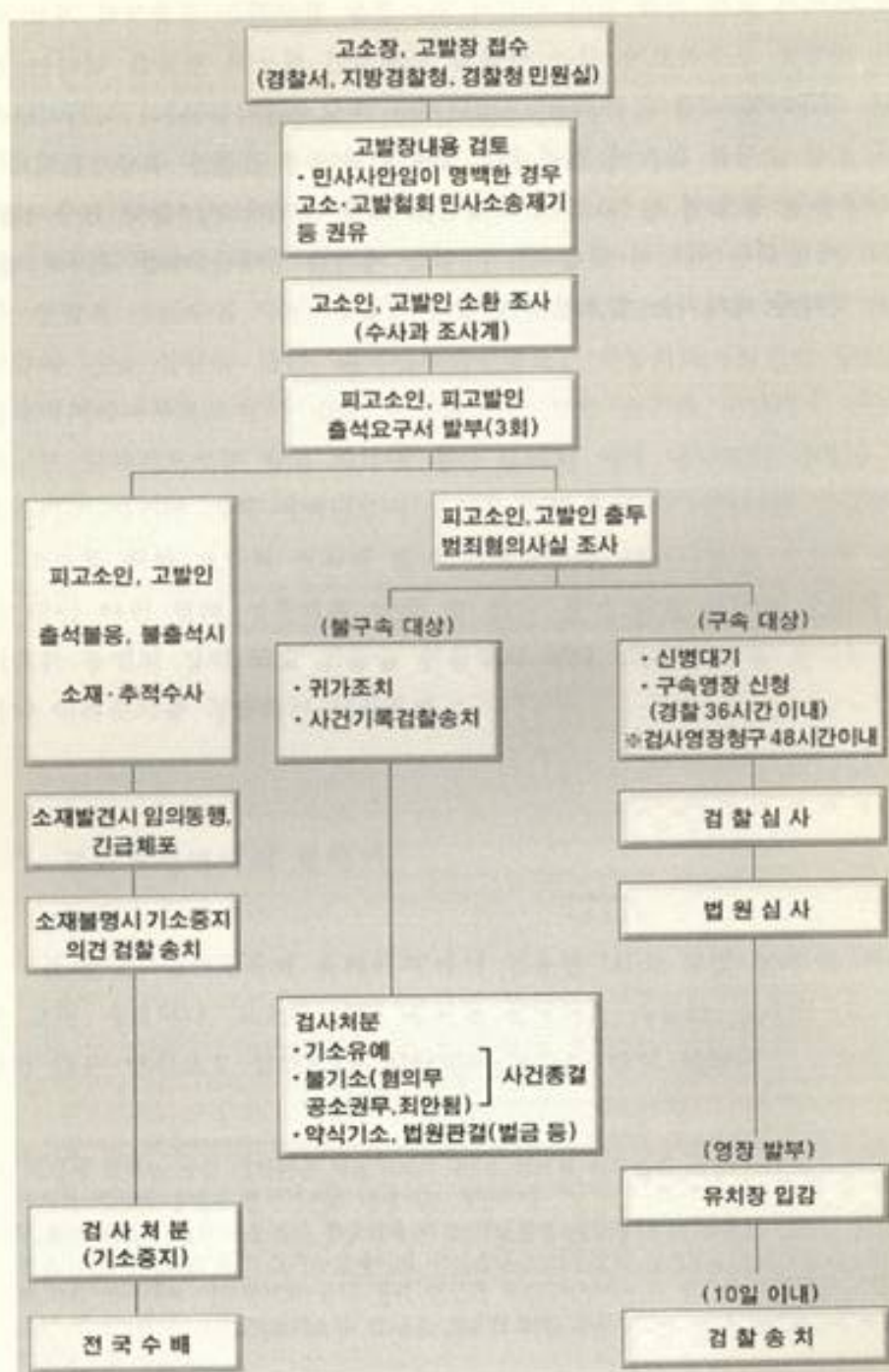
한 부모들이 가장 많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찰청의 자료 역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표-4>의 내용의 주체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표의 순서를 밟으며 실천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인 수사기관이다. 즉 '고발장내용을 검토'하고, '고소인,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고',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고 '체포'하는 등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력을 가진 국가의 법 기관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16) 여기서 말하는 공적 영역이란 자본주의의 공/사 분리의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다. 사적인 영역으로서의 가족의 영역과 정치적으로 대별되는 개념이다.

공/사 분리 개념에 대한 이분법의 추상성과 여성 차별적인 적용에 관한 비판을 자세히 보려면 다음을 참조, 허라금, 1995, "서구 정치사상에서의 공사개념과 가부장적 성차별성", 여성학논집 제13집, 장필화, 1995, "아시아의 가부장제와 공사 영역 연구의 의미", 여성학논집 제13집, 김선옥, 1995, "공사영역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여성학논집 제13집, 김은실, 1995, "공사영역에 대한 여성인류학의 문제제기", 여성학논집 제13집.

<표 4> 고소 고발 절차를 설명하는 도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지난한 '사건화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청사진을 구하기는 어렵다.

대중매체의 정보로 뉴스나 심층 분석 프로그램들17은 사건개요 중심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인 고소인이 실제로 치러야 '구체적인' 고소 고발의 절차를 알 수 없다. 상담소 역시 '고소하기를 원하지만 너무 힘들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사건마다 복잡한 과정과 경로가 모두 동일하거나 동일하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마다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어떤 형사와 검사를 만나느냐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인가, 가해자의 변호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건화'과정이 달라지기도 한다. 아동성폭력 사건은 또한 각 시기별 정세와도 연관된다. 사회적으로 아동의 인권이 이슈화되어 논란이 되는 시기일 때 경찰과 검찰의 입장과 태도는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져 수사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이슈화라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까지 중대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재판에 있어 3심 제도가 기본인 한국 사회에서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1심 판결까지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이에 이슈라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하자면,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이 조직화되어 사건에 대처하게 될 때 그 사건18은 가해자의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고소과정에 들어가서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점은 '고소의 방법에 대한 자신의 무지'이다. 고소 과정에 대한 무지는 소송절차에 대한 것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피해 입은 '아이의 몸과 말'이 증거인데, 이 증거를 명백한 증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병원, 상담소, 경찰과 법원에서의 진

17)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추적' 등

18)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1년에 발생한 '구성 유아 성폭행 사건'과 2003년 7월에 발생한 '신부예의한 유아 성추행 사건'(이 사건은 불기소처분 되었다)을 들 수 있다. '구성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구성동부아파트 성범죄처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조직하여 사건에 대처했다. 이 '대책위'에서는 "밝은세상"이라는 자체 소식지를 펴내고 각 상황의 경과 등을 주민에게 알렸다. 또한 그 조직적인 대응으로 주민 집회와 서명받기 등을 수시로 실천하기도 했다. 사건은 가해자의 항소로 대법까지 올라가 1년 6개월 동안을 끌게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실행 10개월에 그쳤다. 그러나 '최초로 피해 당사자인 유아의 진술을 증언으로 채택'한 사건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술 그리고 진술이라는 반복적인 절차를 치러야 하고 그 과정은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부모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시간과 경비가 든다.

저는 그래도요, 법에 (아동성폭력에 관한 피해를)신고만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성질나요. 사건 신고 한지가 일년, 이년 다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소도 안 되고) 안 끝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는 해봤는데, 난 진짜 경찰이 다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또 검사 검찰청에서도 검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진짜 처음 경험 해봤던 거고, 난 검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부르면 있는 그대로 얘기 해주고 그러면 기소가 되는 줄 알았더니, 진짜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당했잖아요. 무혐의 내렸다는 게 말이나 되요. 그러니까 애 말은 진짜 무시 한거잖아요. 애가 지금까지도 다 기억하고 일년 사이에 말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핵심적인 얘기는 맞거든요. 누가 그랬다, 어디서 그랬다 하는 건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례 E

고소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잖아요. 저는 사건이 검찰로 올라가면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것도 모랐거든요. 아마 대부분 엄마는 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경찰에서 2주 동안 3주 동안 많으면 3개월 동안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이런 얘기도 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던 엄마들은 고소절차와 관련된 것들을 너무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고소과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전혀 없었어요. 검찰조차도 수사에 관한 얘기와 피해자가 고소과정에 해야 할 일에 관한 이런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사건 발생 장소에 가서 조사를 받을 거다, 여기서 받지 않을 거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거기 가서 조사 받아야 하는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소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사건장소는 우리 아이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고, 나도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너무 힘들죠. -사례 G

사례 G의 어머니가 말하는 무지는 법적 소송절차와 기간 그리고 재판을 위해 피해자가 수행해야 할 증거수집과 비용 등의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지적한 무지의 내용은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편리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음을 지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들은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여 그것이 진짜 '사건'이었으며 자신의 아이의 고통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혼내주기 위한 '사건 만들기'의 지난한 과정을 시작한다.

1-1. 법언어가 통제하는 고통

피해자에 의한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고발¹⁹⁾과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에 회부되고 시비가 가려지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는다. 아동성폭력 사건 역시 수사기관 내에서의 다른 일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수사과 조사계에서 고소가 시작된다.

딸과 함께 피해를 신고하러 경찰에 들어선 어머니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말하기 힘든 사건'을 외부에 알리기로 작정한 자신들의 '용기'를 꺾는 수사기관의 무성의하고 냉담한 태도이다.

한 5분만 더 하면 되는데, 점심시간이라고 밥 먹고 한다 그러드라구. 거기 어디 애들 데리고 점심시간 동안 있을 때도 없고, 점심 먹고 나서 바로 하나 기다려야 되잖아. 그냥 한 김에 조금 늦게 먹고 애 말할 때 한 번에 물어보면 좋은데, 너무 야속하드라고. -사례 H

딸의 손을 잡고 경찰서에 들어선 어머니는 어디에 내놓고 떠들 일도 아니고 되도록 조용히 그리고 될수록 빨리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잘 진술할 수 있는 환경과 어른들의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수사기관이라는 공간은 상처 입은 피해자들 특히 아이를 고려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아이의 피해가 말하기가 금기시된 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 그것도 어렵다면 어른의 배고픔을 잠시 참고 어린아이의 문제를 먼저 봐주길 바라는 인간적인 배려를 소망한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 '어린이에게 해당'하는 '배려'는 '전문적인' 것으로 아직 우리 사회 경찰서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다. 어린이를 위한 심문이나 조사를 따로 수행하는 전문형사조차도 없다.

나이에 의한 차별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유교 문화에서 조그만 애들이 법정

19)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고소권이 있는 고소권자로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과 피해자 사망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다.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에 대한 수사과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http://dbsearch.yahoo.co.kr/law/>

에서 자신의 상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의례 한 대씩 혹은 좀 심하게 맞고 자랄 수도 있고, 심하게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 존재들이다. 더구나 어린 아이들이 성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법적 공간 속에 어린이 피해자들을 위한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의견은 쉽게 공감을 받지 못한다.

수사기관의 비전문성은 “강도, 강간, 폭행 등 여러 가지의 범죄를 한 사람이 한 달에 4-5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사례 갑)경찰 업무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검사들이 말하기를) 애들 뭐 기저귀 갈다가 이렇게 스친 거지 그걸 뭐 만졌냐. 그러는 거고, 이렇게 애들 오줌 누이다보면 뭐 이렇게 (만져)질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무슨 성추행이나 이거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야말로, 법관이나 법에 대해서만 그 자기들 배운 것대만 할 줄 알지.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모르더라고)그래서 이걸 갖다가(이 사건 때문에) 애가 어떤 상태가 됐냐. 애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냐, 이런 전문적인 것을 아는 검사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아동성폭력)그쪽만 자기가 연구를 하든지 공부를 좀 하든지 해야지. 그래야 그 쪽에 아이들 심리상태라든가 뭐 그런(성폭력)행위 하는 사람들에 형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알지. 몰라요 대부분, 막 뽀뽀이 되 가지고, 사건 자체가 막, 그날그날 이만큼 배정된 게 뭐 여기 강도가 들어 있고 도둑놈 들어 있고, 뭐 애고 어른이고 뽀뽀이야. -사례 다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동성폭력을 다룰 수 없는 수사방식의 비전문성의 기본적인 문제는 ‘말’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전문적인 수사팀이 부재한 성인남성으로 구성된 경찰수사팀, 검사, 판사들의 집단은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 딸의 소송 대리자(혹은 소송 주체인)인 어머니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수사방식의 비전문성이 어머니들에게 주는 고통은 자신의 딸이 수사방식의 무성의와 무능력 때문에 겪는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언어와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수사방식과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상의 배려 없음이 ‘말하기’를 통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2차 피해의 고통에 관해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한다. 형사인 사례‘갑’²⁰⁾과 상담원인 사례‘을’의 수사당국

의 수사방식의 비전문성의 문제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통해 지적될 수 있다. 연구자는 두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다.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진술 시키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자]

그게 역차별이죠, 다른 범죄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어린이성폭력만 그렇게 안하나요? 우리나라의 범죄 수사는 증거주의입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증거주의 원칙대로 하(조), 살인이나 방화 현행범의 경우는 유치장에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임의수사 강제수사하고 피해자와 대질도 몇 차례씩 하고, 다 똑같은 절차(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로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억울하다고 한 사람은 끝까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신고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들의 사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 전통적인 유교사상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사상이 변화되면) 고소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시스템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피해자들의 호소로 권장되고 있는 피해자 증언 비디오텍²¹⁾ 사용과 같이) 시스템이 발전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례 ‘갑’

[경찰의 입장에서 증거주의인 수사방식을 근거로 하다보면, 잦은 증언이나 출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나요? -연구자]

피해자들이 제일 일선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경찰들인데, 우리가 2차 피해라고 규정하는 범주 안에 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아이들이 자신의 피해에 관해 진술을 잘 못하는 것)이 관념의 문제라고 그들은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에 대한 문화를 쉽게 풀어가는 그런 문화는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더욱이 발달 과정에 있는 애들이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른의 성과 연관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 해낸다는 게 그게 무슨 관념에 문젠가요? 입장이 다르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시행을 해보고 뭐가 맞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야 하는 건데, 저는 시스템이 일단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 평가는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례 ‘을’

20) 사례 ‘갑’은 주인공인 참여자의 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험을 가진 형사로서 해당 사건의 피해부모는 ‘갑’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낄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한’(사례 ‘가’) 형사이다.

21)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아이들의 진술을 녹화하여 증거로서 수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비디오텍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실시되는 초기의 전문가 진단 단계에서 실시되는 것인데, 녹화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제도는 잦은 진술로 인한 아동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사례 ‘갑’은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왜 숨기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숨기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성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지적하는 것이다. 유교적 성문화에서는 성에 관한 이야기는 금지되어 있다. 이런 문화의 사람들은 아동성폭력이 시간이 가면 잊혀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교적 문화에 길들여진 사회구성원들은 가해자도 좋고 피해자도 소문 안 나서 좋고, 주변 사람 신경 안 써서 좋은 침묵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사례 ‘갑’의 지적은 그러한 문화가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 자신이 피해를 당했고 억울하다면 고소를 끝까지 할 것이고 그렇게 소리를 내야 제도가 바뀔 것 아닌가 라는 말이다. 사례 ‘갑’의 해결 방안은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를 사람이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

사례 ‘을’ 역시 문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고, 현재 한국 사회의 성문화가 성에 대한 언설이나 담론들이 개방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문화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질문은 ‘성폭력’에 관한 것이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며, 아이들의 입장에선 ‘성’에 관한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관념의

22) 사례 ‘갑’은 또한 어떤 사건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즉 ‘아동성폭력’ 사건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보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 집행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사례 ‘갑’의 말은 ‘법’의 절대성, 언제나 불변하는 하나의 진실에 대한 잣대로서 절대적인 것으로 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나 ‘법에 의한 처벌’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권력의 집행은 절대적이지 않다. 사회마다 범죄라고 명명하는 것은 각각의 역사적 시기와 문화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 역시 달라진다. 이것의 구체적인 예는 현재 이름을 바꾸었지만(내용이야 어찌되었건 간에)지난날 한국 사회에 ‘국가안전기획부’가 있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50년부터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진다. 분단 이후 남한의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세력에 ‘과경과 용공’의 딱지를 붙였다. 분단의 현실을 정권의 정당성으로 삼았던 정부는 반공을 정치적 이념으로 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소위 ‘과경과 용공’을 퇴치하기 위한 처벌하고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었다. 말하자면 그것이 ‘국가안전기획부’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안전기획부’는 그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에 사상범이었던 자들의 상당 부분이 일반인이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사회주의 조직이 주장하던 내용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범죄가 국가권력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군사 구테타라는 폭력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부의 정권유지에 대한 노력은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자들에 대해 ‘범죄 집단’으로 구성해내고 처벌했다. 그러나 민간정부가 생기고 나서 당시에 사상범들은 다시 시민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여성억압의 핵심적인 원동력으로서의 성폭력을 비판하고 처벌하기를 원할 때, 정부가 그것에 반대하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가의 거부장제 유지의 의지를 의미한다. 여성을 통제하는 성폭력을 검거하지 않는 것 역시 거부장제가 자신의 권력의 마지노선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국가적인 범죄로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면 굳이 ‘안기부’ 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른들이 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어찌하여 아이가 어른들의 관념을 이해하고 알아듣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 그것은 어른의 관념의 문제이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제도와 문화의 문제인 것이다. 성문화는 단순히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만일 ‘유아성폭력사건의 고소 과정’에서 성에 관한 문화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어른들의 폭력적인 성’에 관해 잘 몰랐던 어린이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잘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의 부재에 관해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아동성폭력’의 대책에 관해 잘 모른다면 아동과 성폭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례 ‘을’의 말은 수사기관에서 ‘증거’의 문제는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수사에 유일한 증거인 어린이의 진술과 상처가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물증중심의 수사’를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의 몸과 말이 가장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 사실은 ‘정황증거’만으로 채택된다. 그렇지만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더 확실한 증거 즉, 증인이나 정액의 검출 혹은 체모 등이다. ‘정황증거’는 일종에 ‘심증’으로 ‘물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성인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과는 다르게 어린이에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는 그것을 ‘화간’이라고 억지를 부릴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가 범죄를 부정할 경우, ‘혐의 있다, 아니다. 범죄이다, 아니다’의 공방은 부모와 가해자의 싸움으로 변한다. 이때 수사기관의 태도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결과가 되고 만다²³⁾.

23) 그렇다면 왜 알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알 수 있도록 ‘그 폭력의 범죄를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와 연구를 통해 증거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해야 할 것은 비전문성이 ‘정황증거’를 ‘증거’로 끌어올려 보장시켜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심증’의 단계에 머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결국 아동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태도이다. 결국 수사과정의 비전문성은 사회의 아동성폭력을 범죄로서 인정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문제 삼고자 하고, 그것을 근절하여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 성적 폭력에 관한 말하기의 창구를 좀더 어린이와

피해자로서 혹은 고소인으로서 어머니는 고소장의 형식에 맞게 자신과 딸의 성폭력 피해에 관한 고통을 적어 넣었다. 그러나 고소장에 기입된 피해와 고통만이 어머니의 고통은 아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형식화된 그 고통'만이라도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을 수행하는 수사기관은 어머니의 형식화된 고통의 설명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1-2. 어머니의 말과 법언어의 경합

고소과정 중에 어머니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때는 어린 딸이 피해를 직접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다.

수사과정에서 아이가 진술하는 과정 그것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사 쪽에서 앉아서 진술하는데 담배연기가 막, 나도 싫어하는데 그 속에서 애는 담배연기 속에서. 밥 먹고 또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남자들 틈에서 했다가 막 검찰에 가보면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애한테 물을 때, 한숨을 쉬어요. 애한테, 내가 니를 데리고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애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애는 대답을 하다가, 제가 봐두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밤새 애 얼굴 앞에서 담배 뽕뽕뽕 피면서, 애가 주눅이 들어 하면서도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일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남자들한테 관대한지 몰랐어요,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럴 줄 알았다면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이, 혹시 이런데 나도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대응)할까요 하면 솔직히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례 C

우리 아이한테 몇 분을 했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검사님은 시간 재고 하나요. -사례 H

딸의 진술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사 담당자의 무성의하고 무례한 태도와 말

어머니의 입장에서 정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말하기 어려워하고 고소를 중도에 포기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아동성폭력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한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의 사건의 수사방식의 전문화는 피해자들에게 '말하기'의 창구를 만드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에 어머니는 분노한다. 어린아이의 증언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담당자는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몇 분을 했냐고'(사례 H) 하는 질문을 한다. 그리고 말도 다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 "육하원칙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아이에게 형식에 맞추어 말할 것을 어른이 요구하는 행위는 이미 강요된 말하기이며, 말하기 주체에게서 행위성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담당자는 아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어찌 그 남성 때문인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런 애를 보고 성적 환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수사담당자들은 나름대로 양심적인 성인 남성의 입장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못 난처해한다. '나도 남자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난처한 태도는 가해자가 친부이거나 친척일 경우 가해자를 지목한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더 나아가 이미 범죄라고 밝혀진 사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현한다.

(가해자 변호사가) 그렇게 다 물어본 다음에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처벌 받기를 원하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여태까지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 말을 믿는다고, 나는 판사님만 쳐다보고 말했어요, 가해자 변호사는 개의치 않아요, 나는 우리 아이의 말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돌려서 말하지 말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어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예'라 그랬어요. 아주 내가 그냥 화가 나서 '예' 그랬어요. 그게 질문이나 되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 아이고 변호사들이 기껏 공부해가지구 어떻게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지. -사례 X

가장 힘들었던 거는 검사가 '불기소입니다' 딱 했을 때 그 인간한테 아이가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 1391에도 처음에 자기네가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다시는 보내지 않는다고 말은 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가 떨어지면 아빠는 무혐의로 풀려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이가 다시 그 집에 가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검사가 아이에 대해서 의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딱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랬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그 인간이 나와서 짐승같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보여줬는데,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고, 지가 한 행동은 생각지도 않고, 아이가 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것 보다는, 누가 신고했느냐, 누가 날 여기다 집어넣느냐, 뭐 아주 검사 앞에서도 죽여 버린다고 갈갈이 찢어서 죽여 버리고, 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등, 검사

앞에서도 너 이 새끼 잘해 내가 나가서 너 가만 안돌거야, 이랬대요, 검사한테도, 그랬던 사람한테 내가 다시 내 아이를 돌려보내야 되요?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검사를 노려보면서, 나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난 아이를 다시는 아이를 그 집에 돌려보낼 수 없다고, 그 아이를, 내가, 사회가 두 번 죽이는 거라고. 그렇죠? 검사는 여태껏 조사한다고 예를 끌러다니게 만들어놓고, 인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 아이를 그 집으로 돌려 보낸다는거는 거 두 번 죽이는거 아니에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아이 난 절대 못 보낸다구, -사례 X

아동성폭력에 있어 근친에 의한 피해는 30%이상을 차지한다(강은영, 2002).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상해하는 경우 가중처벌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성적 공격은 사실 자체의 유무에 상관없이 '입 밖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사안에 속한다. 또한 어린아이가 친족의 누군가에게 성적공격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가족은 피해 당사자인 딸의 입을 막지 못한 어린아이의 가족과 친족적 관계를 끊거나 등을 돌린다. 특히 근친에 의한 피해사실을 고소과정으로 가져간 어머니에 대한 친족의 반응은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어 집안의 불화를 자초한"(사례G) 못된 며느리에 대한 비난으로 나타난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도 여기 친척 집에서 사건이 일어난 경우구요.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그 일 다 있고 (**친척 집을)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구 가면 되는 데 거기 가서 얘길 다 해요. 피가 묻었고, (가해자가 자위에 관한) 그런걸 물어봤고, 가슴을 만졌고, 근데 이 친척이 그냥 덮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 뭐라 그러냐면 산부인과 가자 그랬대요. 그 친척이. 그래서 애가, 나는 여기서 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내가 엄마 있는 곳에 도착하면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산부인과 가두 거기서 갈게요 (그랬대요). 근데 이 친척이 우리 아이가 나 있는 곳에 도착한지 3일 되었는데도 말을 안 하거든요. 아이한테 듣고서 고모한테 확인을 하구 그 다음부터 사건화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친척두 가해자가 친척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나한테 전화 왔겠조. 당장에.

근데 시댁에서는 나보고 '가족관계를 나가 깨뜨렸다' 하면서 제 친정집에 전화를 해서 친정 식구들에게 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친정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욕을 먹고 쇼크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실려 가요. 협심증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욕을 욕을 하고 또 니 딸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한다. 근데 이런 얘기는 가해자 친가에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집에 대구 니 새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해야지. -사례 G

딸의 성적 피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계중심적 태도와 발언은 국가의 법을 집

행하는 법조인에 의해 지지된다. 친족가해자를 보석으로 풀어준 송수(가명)판사는 자신의 보석결정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려던 게 아니라, 증인 모두가 가족일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렀던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피해자와) 대질하면 (피해자가)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고, 가족공동관계가 깨져버린다면 큰 정신적 공황상태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판사가 보기에 밀고 따랐던 친족의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보다 더 심한 '공황상태'란 가족의 해체이다.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가족은 부계중심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공황상태'는 근친강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딸의 고통 자체보다 문제가 드러나면서 '가족 내부가 시끄럽고 소용돌이치는 것 자체'에 대한 염려인 것이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피해 후유증을 줄이고 피해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신의진,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가족공동체'라는 가치 뒤에 숨기고 피해아동의 '공황상태'를 염려한다는 것은 이 사회의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의 태도가 가부장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법관의 부계가족중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결정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관념적 승인과 달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민족 혹은 가족과 같은 집단의 규범이나 사회적 강자의 지배 가치들과 경합하게 되면 인권의 구체적 실천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관행 속에서 사소하고, 유보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로 사라져 버린다"(김은실).

여성이 주로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성인여성의 성폭력 피해사건의 남성중심성은 피해자의 어떤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화간일 수 있다"는 의심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좀 다르게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건에서의 남성중심성은 '부계중심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로서 나타난다. '부계중심의 가족주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이다. 강한 가부장성의 가치는 아이와 어머니의 고통을 앞질러 우선적인 가치체계로서 강요된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계중심의 가족문화는 가족내 학대, 특히 성학대와 직면했을 때 피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남긴다. 어린 이성폭력에서 근친에 의한 성적 공격은 가족 외부인에 의한 것보다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시킨다. 피해사실을 외부에 숨기고 치료의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이 믿기 어려운 공격에 어머니가 아내의 역할에서 어머니의 역할로 입장을 정리한 순간 어머니의 고통은 분노로 표현된다. 딸의 상처가 '가족적' 가치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고소과정에서 딸의 상처와 고통은 수사당국이 가진 부계중심성에 의해 가부장제 가족의 가치에 가려진다.

부계중심 가족문화는 어머니에게 가부장적 가치를 전달하는 제도적 모성을 지지 혹은 명령한다. 어머니가 공적영역으로 모성을 확대시키는 실천으로서의 고소행위는 가부장제에 의해 도전 받는다. 송수(가명) 법관의 말처럼 법을 수행하는 자가 공적 영역에 등장한 어머니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딸의 성과 어머니의 모성은 일차적으로 가족 내의 남성이중심적인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성폭력 고소과정 초기에 고통을 형식화시켜내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어린이가 직면하는 고통은 말하기가 강요되는 것이다. 고소라는 자발적인 행위를 시작하는 어머니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기꺼이 수용한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어머니와 딸의 피해에 대해 의사소통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하려 함으로써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는 수사과정에서 의사소통되는 언어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어머니들에게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의 사실'이지 '고통의 사실'이 아니다. 피해를 알아듣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수사기관은 '자발적인 말하기'와 '강요된 말하기'의 공방에 돌입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어머니의 말하기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신이 아는 말로 하기를 원하고', 어머니는 아이가 당한 폭력을 '고통의 주체로서 말하려고'하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수사기관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1-3. 성인남성의 언어에서 배제되는 아동의 피해경험

아이의 피해에 대해 어머니들이 대부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치료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의 피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대처할만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다. 어머니들은 아이의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 치료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호소한다.

가장 필요한 건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건, 아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아이를 산부인과를 먼저 데려가고 그리고 정신과를 데려가고, 아이를 위해 치료를 우선한다는 거죠. 그 치료 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같이 10대인 아이한테는 '가해자의 용서(를 비는 태도)가 아주 큰 그 회복입니다', 그런 얘기를 치료 과정 중에 찾은 거예요.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소 고발을 생각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요. ... (유합의) 경찰이 해준 게 우리한테 가장 크게 해준 게 치료에 관한 거거든요. 경찰이 비디오 자료나 산부인과 자료를 다 준비를 해줄 테니까, 이 자료는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를 치료해서 나가십시오, 이러거든요. 피해자 가족끼리 가장 필요한건, 아이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안정이 먼저예요. 우리는 정리할 시간이 있었어요. ...에서 얘기 아빠가 변호사도 사고 이렇게 나가자고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을 준 건 실제로... 경찰이에요. 한국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막 자료 다 찾아봤지만 별다른 게 없었어요. 단지 우리가 나와서 고소고발을 해야 된다는 그 하나 원칙 외에는 없었는데, ... 경찰은 (한국경찰과) 그게 틀렸잖아요(다르잖아요), 피해자 가족이 힘들까봐, 정신을 못차린다는걸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 집안이 어수선하고, 자기네가 직접 와서 차를 태우고 간다든가, 아이한테 두려움을 안 줄려고 경찰복을 안 입고 온다든가, 주위에 열집이 아는 거 싫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왔다 조용히 데려가서 그러고 비디오를 찍은 곳도 일반 가정집 같이 생겼어요. -사례 G

어머니가 바라는 시스템의 전문화의 가장 기본은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시설이다. 이 시스템은 수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치료사집단, 사회복지사가 한 번에 피해 아동의 사건에 접근하여 치료와 사건 해결을 시작한다. 이것을 '원스탑(one-stop system)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원스탑 시스템에

서 아이가 원하는 한 치료과정은 철저히 비밀이며 전문가들의 도움에 의해 치료와 법적 조치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된다. 피해 아동이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치료과정의 하나을 담은 비디오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증언을 위해 수사기관에 아이를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나 시스템은 경제적으로 주변화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피해자의 부모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주변인 집단에 속하는 어머니의 경제적 현실은 시스템이 다루어야 할 우선 과제가 된다. 아동성폭력 사건의 고소에 있어 어린이의 대리 소송자인 부모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아이의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생계를 뒷전에 미루어야 할 만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소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의 외부인에 의한 사건일 때에 부모 중 한 사람이 혹은 모두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에 관한 것이다.

한 2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거기다 이리저리 불러 다니고 조사하고 하느라고 일을 못한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들었다고 해야지. 언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시간 정해놓고 우리 편한 시간에 부르나, 자기네 시간에 맞게 아무 때고 부르니까, 우리가 부르면 가야지. 그래서 한 동안 가게 일도 잘 못했어요. 어 일 하다가도 가는 거지. -사례 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 몇 번씩 쫓아다니구 녹취록 따러 다니고 거의 출근했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렇지만 일을 하는 엄마는 다른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는 아빠는 덮고 사는 게 아이를 위한 길일 수밖에 없어요. -사례 G

부모가 아이의 사건화에 관여할 때는 어머니는 주로 가족 내부에서 피해자녀와 혹은 그 형제, 자매를 양육 하는 일을 한다. 만일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과 같이 사회복지가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선 '엄마 아빠는 덮고 사는 게' 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건화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혹은 의붓아버지)이거나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지만 어머니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동거인일 때 어머니의 경제적 자립의 문

제는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만일 공격자와의 관계를 끊음과 동시에 경제적 지원이 함께 없어진다면, 피해아동은 공격자는 피했지만 가난한 삶으로 인해 오히려 복합적인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은 아동성폭력 피해자 치료에 필수적이다(Hooper, 1992).

그러니까, (성행위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거는 지가 겪어 봤으니까 (홍내를 내는)거죠, 그런 걸 보려는 아 백프로 진실인데 (그걸 인정 안 하드라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혼한 말로 이민이나 가자, **로 이민 갈려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알아 보구 (있어요). (문제는) 사회적 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인권이 유린 됐을 때,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전문적으로 피해를 밝혀주고 치료해 줄)시스템이 안 되었잖아요, 우리가 겪은 걸로 예기를 해 보면,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들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것을 입증할 해줄 수 있을 만큼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더군요, 겨우 이런(시민, 여성단체와 같은)기관하구 연결된 의사들 좀 (있고), 그 중에서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만 겨우 되지, 나머지들 그냥 그렇게 (아이를 치료)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있는)의사들이 적대라고, 연세대 000의사 선생님도 의사들이 그렇다구 하고, 겪어보니까 그렇고, 그런 의사들 문제, 또 설마 그렇게(아이에 피해를 입증할만한 소견을 말)했다 치더라도 (사건에는)개입을 안 할라 그래요, 사건 개입을, 경찰 가면 (경찰대로)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수사하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 없고)그런 식으로 증거를 찾아서.. -사례 나

성폭력이나 어린이가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즉 어린 여자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성인식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인 딸과 또 다른 피해자인 어머니의 고통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피해자중심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어렵게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사기관의 인력구조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있다²⁴⁾. 성폭력범죄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대부분의 피해여성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있어서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남성일 경우 피해자는 신고를 더욱 더 주저하게 되며 남성수사관 앞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된다는 사실을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한다"(송선향, 2002).

24) <표-5>국내 법조인 성, 직업별 분포 현황 (2003년 10월 23일 자 현황)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에서 인용)

또한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 성인식을 갖춘 법조인이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이해하기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나'의 지적처럼 아동성폭력피해보호시스템이 국가적 차원에서 되지 않는 이유는 제도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요직에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하기는 부적절한 시각을 가진 남성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하여튼 정부가 제일 문제인가 같구요, 이 나라에는 공무원이 제대로 서면 나라는 바로 가요, 근데 공무원이 바로 서질 못해, 바로 서있질 않아, 뭐 이 나라에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정말 주인은 국민이지만, 정 안될 때 움직이는 게 국민이지. 평상시에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라고, 그 시스템은 누가 움직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움직이거든, 아까 그런 제도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공무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성적인 부분 같으면 뭐 여성 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눈을 바로바로 떼가지고 이런 걸 자꾸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고 그러면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인식이 없는 거지,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
지금 사회가 발전되가지고 뭐 여성분야를 우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 이런 시스템 하에서 여성이 진출한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이말이지. 그 어떤 그 사례적인 의미로 이번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여성이 됐지만, 그런 식으로 발탁되서 올라간 사람은 몇 명 있지만, 그 밑에서 또 따라줘야 되거든. 여성에 진출이 많고, 여성이 많고 있는 직책도 많아지고, 여성이 뭐 홍보과장도 하고, 꼭 뭐 여성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뭐 정책 과장도 하고, 이런 시대가 와야 뭐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지금은 어떤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발탁되는 경우뿐이잖아요, -사례 나

변인	구분	빈도	%
성	남	8,333	93.36
	여	597	6.64
	합계	8,930	100.00
직업	판사	1,966	21.87
	검사	1,415	15.74
	변호사	5,609	62.39
	합계	8,990	100.00

사례 나의 말처럼, 현재 한국 사회의 법을 제정하는데 직접적인 자격과 권한을 가진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중 여성의 비율은 <표-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 6.64%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실은 아동성폭력이나 성폭력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여성들이 법제정을 전담하는 제도 내에 포섭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사회 법조인은 "집단적으로 남성 검사들의 보수성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변호사들의 의식은 진보적이다. 이번 연구대상의 표본의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검사집단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법정이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심리할 때 여성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²⁵⁾고 결론내리고 있다. 따라서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의 가부장적 보수성으로 물든 남성으로 채워진 제도 기관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로 여성이 이용할 성폭력보호시스템의 올바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구의 참여자인 부모님들 역시 아동성폭력에 대한 검사들의 보수적이고 비전문적인 지식과 태도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기소 불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동성폭력피해보호시스템에 대한 필요는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는 여성들, 어머니와 아동들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다.

어머니들이 말하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의 부재의 원인과 대책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아동성폭력이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적인 고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고통'²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성폭력은 성폭력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과 대책 없음에 의해 더욱 커다란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2. '말하기'의 사회적 효과

25)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3년 10월30일자로 발표한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결과 보고에서 한국 법조인의 성의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6) "고통은 실제적, 실존적,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며 때때로 절망이나 고립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사회적 도덕적 차원의 고통이 여기에 속하며 이 때문에 고통은 부분적으로 특정집단이나 공동체 내의 구원, 책임, 가치, 정의, 결백, 속죄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클라인만, 2002). 다시말해 본 연구의 '사회적 고통'은 주체에 따라 강한 개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회 안에서 개인적인 고통은 사회적인 문제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지는 고통이다.

2003년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이성폭력보호시스템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성폭력보호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가부장제의 사회적 고통인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범주는 적극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딸의 성폭력에 대해 어머니가 고소의 형태로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게 될 때, 그 '말하기'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되는 것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고소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의 고통이 공적 영역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딸의 고통만이 가중되어 간다고 어머니는 자책한다. 고소라는 말하기의 일차적인 목표는 딸의 심리적 치료에 가해자의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꽤쉽하고', 혹은 '말이 안 되는 범죄의 가해자에게 적법하고 적절한 형벌'을 국가가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에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의 사건화는 어머니가 딸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해석하기 위함이지만 그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사건이 낮은 처벌로 마무리되면서 자신의 '말하기'가 아이의 생존자의 담론이 되기보다 오히려, '낙인'의 효과만을 남기게 된 것의 패배감과 '사건화'의 후회'로 고통스러워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성폭력이 하나의 범죄로 성립되는 법안의 성립은 1993년('성폭력특별법')으로 그리 오랜 역사를 갖지 않는다. 실제로는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하나의 금기이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아내구타, 아내강간, 아동구타, 어른들의 아동의 몸에 대한 부정(neglect)과 유희(아이들의 '고추 얼마나 켜나보자' 놀이에서부터 딸에 대한 숨겨진 강간들)는 여성운동이 "그것이 성폭력입니다"라는 사회적 캠페인의 효과를 보기 전까지 하나의 당연한 문화일 뿐이었다. 아동의 '피해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것도 지난 2000년 '구성유아성폭행 사건'의 판례가 처음이다. 이 사건의 판례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동성폭행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사건에 대처함으로써 만들어 낸 성과였다.

이와 같은 문화적 기반 속에서 성폭력의 피해에 대한 처벌은 그다지 무겁지 않다²⁷⁾. 성폭력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죄의 댓가를 받기 어려운 상

2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의 조항과 같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벌이 중하지 않다.
⑥형법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황에서 고소과정에 있던 어머니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된다. 결국 말하기 힘든 고소과정을 거치고 난 뒤 가해자는 가볍게 사건을 마치고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괜히 사람들에게 아이의 상처만 드러낸 셈이 되었다고 패배감과 좌절을 표현한다.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쥔 수치스럽잖아요. 불안하면 내놓고 다닐 거 아니에요 제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니깐 몇 겹으로 가리고 다니는 상황인데, 거기다 손만 갖다가 (허벅지같은 데)요런데 스치기만 해도 까무러칠 일인데, 근데 진짜 남자 성기를 댔다 그러고 손으로 항

제297조에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3조 (1)상습적으로 전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추행, 간음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⑥형법 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 제29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8조 또는 제301조의 예에 의한다.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에 입각하여"의 부록에서 발췌.)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에는 사형이 없다. 그 벌은 벌금 5만원에서 3년, 5년, 10년의 형을 선고받지만, 어린이에 대한 추행의 범위에서 죄가 인정될 때, 범죄자는 대체로 집행유예로 나온다. <표-6> 참조

⑥ <표-6> 범죄 유형별 및 형량

형량	강간		강제추행		상대수		상대수일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실형	126(60.6)	116(55.0)	65(32.5)	71(41.8)	9(5.8)	16(9.0)	10(14.3)	13(11.7)			210(32.7)	216(32.2)
집행유예	82(39.4)	95(45.0)	120(60.0)	91(53.5)	99(63.9)	100(56.2)	60(85.7)	97(87.4)	10(100)	1(100)	371(57.7)	384(57.2)
벌금			15(7.5)	8(4.7)	46(29.7)	62(34.8)		1(0.9)			61(9.5)	71(10.6)
기타 (선고유예)					1(0.6)						1(0.1)	
계	208(100)	211(100)	200(100)	170(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100)

이 표는 2003년 4월 9일자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제 4차 신상공개자 643명에 대한 "자료 분석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문을 만졌다 그 정도 되면 벌을 엄하게 내려야 되잖아.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만질 수도 있다. 뭐 꼬추 얼마나 컸나 그러고 만져갖고 자란 세대들이 법 기관에 있으니까 그러고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숨겼잖아 창피해서라도, 나부터도 우리 딸 숨기구 싶은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숨겨졌으니까.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떳떳하게 하구 다니고 제3제4 범죄까지 하는 거고, 그러고 (감옥에)안 들어가잖아? 웬만해갖고는? 그러저? 어, 그러니까 법도 안바뀌고, 판사 같은 사람은 무죄 때리고, 아니면 뭐 가볍게 어떻게 어떻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은 10개월 때려주는 시늉만 해주고, -사례 F

기소된 범죄가 피해에 맞게 처벌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증언 과정 중에 어머니와 딸의 말이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다(Audrey, 1989). 그리고 고소 과정 이후에는 가해자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인해 고소과정에서 말하기 행위를 선택한 것을 후회 하게 된다.

2-1. 가부장제의 어머니에서 여성/어머니로의 경험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인 아동성폭력 수사방식은 어머니와 아동의 고통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은 성인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언어와 발달심리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성중심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성에 관한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력의 진술에 있어서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법 언어는 고통보다 폭력에 대한 서술중심이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이 말하는 것은 "모든 증거다 다 있어도, 목격자가 없고 아이 딸이 신빙성이 없다"(사례 가)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도 꾸며서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바꾸지 않는 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고, 가해자를 지목하는 딸의 증언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판사가 아동심리에 대한 식견이 있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딸의 말이 충분히 증언이 될 수 있음을 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과 딸의 말이 법적 기관에서 의사소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법 앞에 선 모녀의 말하기가 법적인 형식으로 강요될 때,

어머니는 딸에게는 강요된 말하기의 고통을 줄여주고 싶다.

실질적으로 사건이 가해자와의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진의를 놓고 사투를 벌이는 상대는 수사기관이다. 수사관들은 어머니와 아이의 고통을 의심한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검사 앞에서 손가락이 거기를 찌들려면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 나는 압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 검사를 깨우쳐야만 됐었다구요. 어떻게 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도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하필 그 날 왜 팬티에 피가 묻었고, 그 열상을 가졌습니까. 근데 자위행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애가 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자위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이렇게 찢어지고 피가 나게 들어가고 상처를 주려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이 내가 즐길려고 하는, 그 자위를 즐길려고 하는 건 그렇게는 못한다는 걸 난 말할 수 있다고, 거기서 나는 여자가 아니에요. 엄마도 아니고 단지 이 아이를 태변하는거죠. 개는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지 엄마 아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피가 나고 아빤 하는 게 개가 할 수 있는 말을 내가 다 태변하는 건데요. 나는 결혼생활 13년 동안 이것두 해보구 저것두 다 해봤습니다. 이걸 똥피가 아니에요. 검사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거 겠죠. 자기가 여자가 아니니까 그걸 못 느끼겠죠. -사례 G

가해자 변론하고 가해자 변호사 변론, 하고 바로 판결 ...그것도 증거는 하나도 없고, 산부인과 그것도 정황증건가 그것도 채택할 수 있고 아이의 말도 신빙성이 없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땅에선 당하고도, 아이들 아동 인권, 아동 인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인권은 무시당하고? 부모가 지켜주고 싶어도 알고는 다시는 못해요. 만약에 안다면 이렇게 힘든지 알았더라면 안했을거 같아요, ... 한 달 동안 고박 울드라구요, 구토를 했다가 막 한 두시간 되면 꼭 그랬어요, 서럽게 서럽게 우는 거야, 막. 아, 마음이 미칠거 같아서, 내가 도대체 뭐하나, 내가 내 자식한테, 고통을 더 줄라고 손에 끌고 다니면서 '살이었으니까, 부모가 되서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하라고 말을 하라고 끌고 다니는 꼴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판 이라는게 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 싸움 아닐까, (어른들이 싸우면서)니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하는 게 되버리고), 가해자하고 저희하고 싸우면서 애가 오히려 고통 받는 건 아닐까. 그 생각도 들고. -사례 C

어머니는 딸의 피해에 관한 '고통'을 설명하는데, 검사는 '어쭙잖은 성지식'

으로 성폭력의 상처를 의심한다. 결국 아이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는 검사에게 여성의 성에 관한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 말하자면 어머니는 평소에 알지 못하던 낯선 남자에게 성적 폭력에 있어서 여성의 피해와 고통을 설명해야 한다. 여성이 겪는 피해의 고통에 관한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건 이전까지 사생활²⁸⁾에서나 말해오던 '성'에 관해 공적 영역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남성적 성문화와 윤리 속에서는 여성이 '자위'에 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타부이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일상적으로 성에 관해 말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어머니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교육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남성중심의 유교문화와 여성의 순결이 성규범인 사회에서, 여성은 공공연하고 분명하게 성적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자신의 의지와 다르다고 해도 검사를 '가르쳐야 한다' 이때 어머니는 이미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가 명명한 어머니도 아니고 또한 여자도 아닌 그 이상의(혹은 기존의 어머니와는 다른) 존재여야 한다.

어머니가 검사에게 여성의 성(sexuality)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서 인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에 관한 지식이 남성중심적이라는 사실이다.

어머니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딸의 지원세력으로서 고소하고 기소에 힘쓰는 것은 일차적으로 딸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죄자불벌원칙”과 ‘증거주의’인 한국의 법제도 상에서 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사례 갑)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 선 검사가 범죄를 증명해야 한다. 검사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어린이의 '증언'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머니는 딸의 치료를 위해 시작한 고소과정이 오히려 성에 관한 고통스런 기억을 각인시킨 꼴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된다. 그 고통은 어른이 아닌 딸이 어른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모순에서 발생한다.

고소과정을 일단락 짓기 위해 재판에 입하는 법원은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성인으로서의 굉장한 의심과 폭력을 가하고 아이들의 극도의 고통이 가시화될 때

28) "보통 '공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이해되는 '사적(private)'이란 말은 삶에서 가려워져 있어야 할 '은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하여 어떤 때는 성이나 생리작용과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하며, '개인적인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허라금, 1995)". 는 여기서 말하는 사적이란 개념은 '보통'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나서야 아이들의 고통에 시선을 준다.

사례 F - 3학년 짜리 애가 판사 앞에 변호사, 검사, 판사, 갓잡아, 판사 앞에 들어오라니까, 00이두 울구 할아버지 봐버리니까, 묶인거. 00이는 그거 봐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 앞에서 막, 그 문 두들기면서 개새끼, 내가 왜 그 새끼를 봐야 돼. 이러면서 막 ...그거를 000판사가, 너무 막 복도가 시끄러우니까, 우리 기다리다가, 딱 나와서 본거야, 나쁜 놈 할아버지 나쁜 놈 새끼, 그런 거 보니까는 판사도 인자, 어른이면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초등학교)3학년짜리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 정도까지 하나, 판사 앞에까지 와서 그런 느낌도 받았을거야, 아마, 저게 진짜구나. 거짓말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진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거야.

성폭력의 고통에 대해 불감증인 우리 사회 법조인들이 아동의 성폭력피해를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범죄의 처벌은 아이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내려지지 않는다. 처벌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수행하는 검사와 남성판사가 피해의 정도가 아니라 폭력의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딸이 당한 아동성폭력의 문제제기를 위해 공적인 영역에 나온 어머니는 딸의 '딸의 어머니'(리치, 1976)로서 출현한다. 어머니의 말하기가 공적인 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는 공적인 영역에서 '딸의 어머니'로 증언함으로써 여성 화자로 등장한다. 남성 언어로 구성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말하기는 무화되거나 의심받는다. 어머니는 딸의 어머니로 성폭력의 피해를 말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 정체화된다.

2-2. 남성언어에 패배하는 여성/어머니의 말하기

판결은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마무리되는 곳이다. 고소를 일단락짓는 판사의 판결에 의해 어머니는 자신의 말하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말하고자 결심하고 자신이 행했던 고소행위를 후회한다.

"법에 정의된 성적인(sexual) 공격은 여성 자신에 의해 정의된 행동은 없다.

(성적 공격에 대해) 많은 남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해가 없는 유희' 혹은 '단지 친근한 행위'로서 정의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경험이 아니다. 평범한 것으로서 추행을 정의함으로써, 남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러한 행위가 문제제기 될 때 여성들의 인식을 대충 처리 한다"(Kelly, 1988).

(내 딸이)엄마로서 생각 못하는 거를 말했을 때 너무나 덜덜 떨리는데. (검사까지) 가해자편에 서서. 검사한테도 개새끼 소개하고 말하고 싶었어요. 검사는 피해자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사가 아이를 헐뜯는거야. 검사가 애한테, "니가 그런 말하면, 엄마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에 안내방송을 하겠다. 누구는 버릇도 없고 거짓말 장이고 나쁜 애라고". 진짜 몰라서 그럴까?, 검사들을 죽이고 싶어. (어느 엄마가 이렇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사건화 시키겠냐고, 가해자가 형을 살고 있다면, 일이 잡히고 구속돼서 죄받는다면 외국가고 싶은 생각 안들 것 같아. 당당하게 신나서 살 것 같애. 안됐으니까 당당할 수가 없지. 가해자가 처벌 되어 땃땃하게 활개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례 X

어 끝난거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 많은데서, 일대일로 만나서는 나쁜 놈 해도 되는데, 사람들 많은데서 이름 부르면서 이사람 너 왜 그랬냐 그래도 명예 훼손이래요, (처벌받은) 10개월 안에 (모든 죄의 땃가)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억울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살고 나왔어요, 나쁜 놈 똘 똘 얘기하고 싶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0년을 살아도, 이사 가라 못살겠다, (할 판인데) 지금도 10개월 딱 살고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다니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닌다고 (소문내고)아우 그 소리 듣고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

(판사)고급공무원까지 (하고)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짓을 했겠냐. 진짜 아니지 않나 (-웃음)감이 안 온다. (=감으로 수사하냐) 안 믿어진다. 검사한테 그랬대,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우리 공소장 그래서 바꾼거 같애. 그걸로는 도저히 실행 그대로를 12개월 못해주니까, 무죄 아니면 실행은 12개월이나 그렇게 못해주니까. 공소장을 변경해라 그렇게 얘기한거 같애. 물이 손뼉 쳐갖고, 변경해갖고 그나마, (=그래서 좀 말바뻗구내)음 '손고락을 집어넣다'를 그냥 '만졌다'로 한거잖아. - 사례 F

이 두 사례는 법 집행관들의 가부장적 공모를 보여준다. 검사는 아이의 말을 무조건 거짓으로 '단정짓거나 몰아세우고' 조금이라도 가해자를 벌주고 싶다면 '검사가 제시하는 시나리오'에 지장을 찍어야 한다.

사례X는 자신의 딸을 강간한 친부를 고소했다. 검사는 처음부터 아이의 말

을 믿지 않았고 나아가 아이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험박까지 동원한다. 검사들에게 자주 보여 지는 '아버지 지켜내기'는 한국 사회가 아버지의 법임을 잘 보여준다. 사례 D와 F 모두 고소과정의 말기에 사건화를 후회한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법을 수행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현했다.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언어로 구성된 법의 영역에서 자신과 딸의 고통은 '강요된 말하기'로 치환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치환되어진 고통은 피해를 설명할 수 없었고 결국 패배했다고 일부의 어머니들은 말했다(형량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말이 처벌 과정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만족하는 어머니들도 있다). 왜냐하면 고소기간 보다도 짧은 기간의 형을 선고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딸의 말이 '제대로' 처벌에 수용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받는데 이러한 형량은 고소기간보다 짧은 것이다. 피해자의 피해를 반영하지 않은 판결로 인해 오히려 어머니는 '땃땃할 수 없다' 법의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 어머니와 딸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스스로 '침묵'하기를 강요당하게 된다.

공적인 제도의 장에서 의사소통되는 언어는 남성과 법의 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딸의 피해를 증언하는 '여성피해자의 말'은 '언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말을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은 어린이성폭력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보다 오히려 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언어의 부재는 언어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언어화될 통로와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이기도 하다.(최은경, 2001)

'법'이라는 공적언어의 장에서 성폭력의 고통을 말함으로써 어머니는 여성으로 치환되었다. 어머니가 딸의 피해와 고통을 말하기 위해서, 혹은 말하게 되면서 여성의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성폭력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여성의 말하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고소를 결정한 어머니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뒤로 남겨 두고 딸에게 피해를 입힌 남성을 공적인 처벌을 통해 응징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처벌의 효과가 오히려 패배감을 주고 가해자에게 가야할 낙인이 자신과 딸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는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한다.

어머니들은 고소를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법이 남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줄 몰랐”(사례C)지만 고소과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우리 사회 법 언어의 남성 중심성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IV. 피해자의 고통이 배제된 ‘성폭력’

한국 사회에서 주류화된 성규범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잘 사는 것이 하나의 전형인” 이성애이다. 이성애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²⁹⁾. 문제는 이성애가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차별적인 권력을 전제로 규범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사회의 여성억압적인 권력구조와 관계가 있다. 남성중심의 이성애 사회에서 아동성폭력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지배의 표현이며, 어른으로서 사회와 가족 내에서 무권력자로서의 역할을 준비시키기 위해 여아에게 이성애제도를 강제함으로써 침묵과 종속을 확보하는 것”(Emily Driver, 1989)이다.

어머니가 성폭력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사회적 고통’으로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이성애 사회의 성적 정치적 억압에 의한 것이다. 어머니는 딸의 문제로 인해 남성중심 사회의 여성 억압의 고통과 연속선에서 고통을 경험한다.

우리 사회는 남성의 이성애적 성적 욕망이 맨 위에 위치하는 성위계 사회이다. 남근 중심의 이성애 사회에서 성폭력을 겪은 딸로 인해 어머니가 겪는 고통의 정도는 성폭력이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질하구 이거하구 완전히 끝이 없었대니까, 끝이 없었어요, 끝이 없었구 이 속안에 뭔가가 다 나와있다 그랬거든. 뭐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다 보였다고 그랬거든, 내과 의사가 내과 의사하구 같이 했었잖아요, 그거를.

[대수술이었네요]

그랬나봐 내과의사하구 같이 했어요. 외관가? 내관가?

[수술이니까 외과겠조?]

어 외관가봐, 내과가 아니구 외관가봐. 외과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했잖아요. 산부인과선생님만 한 게 아니구. 속안에 뭐 내장 어디 뭐가, 다 이렇게 보였다고 그러드라구, 처음에 데려갔을 적에 빈혈이 너무 심하다구, 애가 처음에 빈혈이 있었나구 그러드라구,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가지구 애가. 빈혈이 있다구, 근데 처음에 애가 왔을적에는, 처음엔 그렇게까지 심한줄 몰랐으니까 나는 날이 추우니까 춥다고 그러는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애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춥다 그랬나봐.

29) 물론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성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수술해야 되니까, 다른건 아무 것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드라구, 그냥 곧 바로 거기서 닝게루 꿈구서는 뭐 가라앉힌다고 그러시드라구 수술실 들어갔지. 처음에 왔을 때는 피가 있어두, 애들 성폭행 당했다는 소리는 듣구, 니두 옛날에 첫경험 해볼 때, 하은 피나오구 이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두, 딱 애 저기하구서는, 아 병신되는거 아닌가. ...싶드라구요, 근데 병원에 데려가서 상황이 안좋게 얘기하구 그러니까는

아,
저걸

죽어서나 보내지, 죽어서나 보내지,

난 지금도 그런 생각해, 내가 못된지는 몰라도 지금도 그 생각해, 저렇게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갈 바에는 나한테두 그렇구 재한테두 그렇구, 죽으론 재두 편하구 나는 그 자리에서 애 죽었다구

통곡하구 말은 그 뿐이었을텐데 그런 생각. - 사례 X³⁰⁾

‘차라리 죽어서나 보내’다니.....

그 깊은 절망³¹⁾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기 보다 죽는 게 낫다니. 아니다, 그 절규는 진심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딸아이의 강간 피해가 죽음조차 인정하는 이유가 되는 그 고통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1. 폭력적 욕망으로만 해석되는 성폭력

어머니가 말했다.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갈 바에야 죽으면 재두 편하고, 나는 통곡하구 말면 그 뿐이었을 텐데”. 이 말은 여성의 성적통제로서의 성폭

30) 이 장부터는 사례에 대해 ‘사례 X’라고 쓴 것이 보여질 것이다. 이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신상이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이다. 주로 근친의 성폭력 공격에 대해,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그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려 했다.

31) “절망이란, 밖에는 검은 비가 내리고 방안은 보라색인데, 방 안에 혼자 있는 거야.” 이 말은 연구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가르쳐 준 말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5세였다. 어머니의 고통은 바로 이 절망에 대한 정의로 밖에는 설명할 언어가 없다. 멀쩡한 제 손목을 비틀며 연구자는 우산도 없이 검은 비가 내리는 곳에 서 있는 어머니의 그 깊은 한숨과 분노와 고통이 바로 그 절망으로 칠해져 있음을 보아야 했다.

력이 여성에게 주는 억압과 고통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21c를 살고 있는 여성들은 문화적으로 여전히 ‘은장도’의 규율에 묶여 있다. 즉 여성의 사회적 확장은 성폭력의 한계 지역 안에서 제한된다. 순결이데올로기로 여성을 통제하는 사회가 명명한 오염되어진 몸을 갖는다면, 그 몸의 문제를 사적 영역 안에 숨겨야 한다. 숨길 수 없다면 순결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성적 규범인 사회의 경계 안에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 여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사적 영역을 벗어나 공적으로 알려지고 이야기되면 죄의 부정성(가해자의 것까지)을 뒤집어 써야 하는가.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문화적인 낙인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의 가해자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등 뒤에 숨어 판결을 내릴 때, 그것에 동조하는 가부장제 문화는 가해자의 도덕적 죄목을 피해자에게 던져버린다. 이제 딸의 피해는 오염으로 바뀌고 낙인만이 남았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고통스러운 표현은 여성이 성적으로 얼마나 통제되고 억압 받고 사는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딸의 피해에 직면한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 이다. 하나는 당연히 이 못된 범죄를 혼내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고

한번도 주저하든가 그런 생각을 안했던거 같어요. 일단 이걸 알았을 때는 가슴이 뛰고, 경찰에 바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형사분들 하고 같이 간거 거든요. 무지했다면 무지한거죠.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면 애가 나가서 싸우다 상처를 크게 입었다,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 아이를 힘없는 아이를 상대로, 당연히 신고를 하면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드라구요. -사례 C

다른 하나는 이런 일은 딸아이의 아버지에게조차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으로 급히 치환하여 일단 사건을 숨겨놓는 것이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 사람(남편)한테도 말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지. (근데) 혼자 도저히 못 참고 하루저녁에는 남편을 혼자 새고 나니까, (딸애)는 갑자기 생일이 펄펄 나고 막 그러니까는, 이 사람(남편)은 자꾸 왜 그러냐고 얼굴이 내 혈색이 불안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니라고, OO(딸애)가 아파서 그랬다고 그러고 말았어. (그 때는) 아예 숨겨버리자, (그랬는데) 도저히 안되겠더라고 불안하구 그래가지고(남편한테) 말했더니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지. 어찌 결말이 나려나 모르지만 -사례 F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딸의 피해를 덮으려 했다. 그것이 딸에게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생각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오랜 시간을 딸의 피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때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그 결과, 어머니는 딸의 사건이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숨겨도 좋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다. 그리고 남편에게 알리는 것이다. 현재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피로움보다 딸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치료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머니가 남편과 상의를 결정한 것은 어린 딸의 상처를 어머니 자신의 문제로 망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어머니가 남편의 아내로서 보다 딸의 어머니로서 성을 둘러싼 폭력을 문제화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다.

사례F의 경우 딸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내면화된 시선으로 해석하거나 말할 줄 모른다. 사례 G와 피해 아동의 연령이 10대인 경우는, 남성 중심의 이성애적 성문화가 여성인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으로 내면화 되어 있다.

왜 니가 (성폭행 당한) 그 얘기를 하게 됐니. 3일 동안 얘기를 안했잖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 (성관계)했니?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들린대요. 너 그거 했니. 자진 (성관계가)아닌데. 그래서 다시 정신차리구 그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들구 대답을 한다는거예요. 자진 그게 너무 무섭대요. 남들이 다 알구서 자기한테 '했니'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지금 정신적으로 그런 혼란이 오기 시작한 상태에서 도저히 무서워서 혼자 감당을 못하겠다구 얘기를 한 게 그 일을 당하고, 12월 31일 날 일을 당하구 15일에 OO(딸) 왔구 3일정도 후니까 18일 동안을 얼마나 고

통스러웠을지, 차라리 말을 하구 나면은 엄마가 책임져줄거 같은지 그 다음 부터는 먹기두 하고, 물건 이것저것 사달라구 떼두 쓰구 그랬드라구요. 근데 그게 젖 가슴 아팠어요. 18일 동안애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 죄라구 생각하구 근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는지. 막 어떨때는 그렇게 검사님이 힘들면, 이 내용을 한번 내 놓구 공, 엑스로 한번 찍어보게 하자 여자든 남자든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얘기를 만드는지 너무 고민해요 검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사례 G

이성애적 외음부 삽입 성교가 맨 위에 위치하는 성적 질서(제프리 워스, 1999)와 관행 속에서 성관계를 '했니, 안했니'라고 묻는 것의 중심은 남성의 성기에 있다. 대부분 성교 횟수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에 삽입되는 횟수를 말하거나, 남성의 사정 횟수를 말한다. 이와 같은 남성 성기중심적인 성문화에서는 여성의 성과 몸에 관한 고통이나 피해를 설명 하기란 쉽지 않다. 딸은 자신이 공격을 당한 것이고,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딸에게 '너 했니?'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 환경이 들리는 것은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결백과 고통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 가? 그리고 아이들은 성폭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나아가 성폭력에 동조 '했다'고 의심할 거라는 딸의 걱정이 들어있다.

딸아이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성어른 중심의 사회에서 10대 소녀는 자신의 성에 관해 설명할 언어와 통로를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으로서 딸과 공감할 갖는 어머니는 홀로 감당해야 했던 답답함과 막막함 그리고 고독 속에 있던 딸 아이를 보는 것이 가슴 아픈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검사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진실을 아이의 고통을 통해 발견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의 바램대로 진실을 증언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믿고 그간의 고독한 고통을 어머니에게 의지하려 한 것에 대해 보답하듯이 아이의 고통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리고 법의 수행자인 검사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로서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사가 아이의 피해와 증언을 의심하는 것은 남성적인 법 언어가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공적영역에서

여자아이의 성폭력 피해는 피해 아동의 고통과 상관없는 언어로 구성된다. 즉, 딸의 피해와 고통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 비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의심하는 성폭력 사건의 예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공적 언어의 장에서도 드러나지만, 일상에서 통용되는 성폭력에 대한 언어의 '남성행위 중심성'과 '남근의 욕망'으로만 표현되는 '성문화'에서도 역시 드러난다.

1-1. 고통의 언어와 폭력적 욕망의 언어

우리 사회에서 성은 나이와 성별에 의해 위계적인 성인 남성 중심적이다.

근데 몰라서 그렇지, 아동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거야, 그러니까는 크고 작게 일어나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의식수준이 아직까지도 그런걸 성폭력이라고 의식을 못하는 거지. 왜 외국처럼 머리 쓰다듬어도 안된다는(이런 생각은 안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남에 애든 내 애든 이쁘면 한번 안아줄 수 있고, 그런거지. 나부터가 남자애구 여자애구 이쁘면, 너 몇 살이니, 어디사니, 어머 너 이쁘게 생겼다, 이런 말 그냥 편하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완전히 그 애가 기분이 좋은 나쁘든 내 감정 대로 얘기하구 그런 거지.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 생활에 그냥 보편적으로 녹아있어, 그러니까는 우리 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애들 성폭력이나 인권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지, 여기서 텐트가 나가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사례 다

사례 다가 말하는 것과 같이 어린 아이에 대한 어른의 자기 감정 위주의 여러 가지 대화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된다. 뭇다고 때린 것도 아니고 이쁘다고 한건데 뭐가 문제가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화적 사고방식은 아이의 입장과 감정 그리고 욕망에 대해 어른의 입장에서 삭제하거나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질서 속에서 사회적으로 타자에 속해 있는 여성과 아이들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한다. 언어란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지와 실천을 담아내기 위한 약속이다³²⁾. 따라서 여성에게

언어가 부재하다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성적 언어로 되어 있는 제도의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의 의지에 의해 처리될 때 '반항'하기 어렵다.

고소과정에서의 법 언어와 질서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타자들은 남성의 폭력적 성을 문제제기하려 할 때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고통'으로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폭력에 대한 명명 자체가 남성의 '폭력적 욕망의 실천'을 담는 말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³³⁾. 4살 짜리 아가의 몸에 대해서도 젓가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린 여자아이의 몸을 범

32) 한국철학사상연구회편, 1989, 「철학대사전」, 동녘.

33) 다음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제 3차 신상공개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제3차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죄유형별 사례"이다.

- 범죄인(44세, 용접공)은 1991.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처상으로 징역 5년을, 1996. 2. 9.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아 2000. 1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1. 3. 19. 15:30경 길거리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자어린이(11세)를 보고, 애인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여 여인숙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여자어린이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방안에 있는 가위를 여자어린이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옷을 모두 벗겨 방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여자어린이의 00에 1회 삽입하여 강간. ※ 형량: 징역5년.
- 범죄인(37세, 영어학원강사)은 2000. 7. 11. 17:00경 학원 2층 강의실에서 여자어린이(8세)에게 영어교습을 하던 중, 갑자기 @을 일으켜 여자어린이를 범죄인의 무릎에 앉힌 후, 속옷으로 손을 넣어 00를 만지며 손가락을 여자어린이의 00에 집어넣고 돌리는 등 강제로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4. 18부터 7. 11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어린이를 강제로 수행. ※ 형량: 징역1년.
- 범죄인(32세, 신문배달원)은 저채장에 3급 4호의 장애가 있는바, 2001. 10. 10. 16:00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여자어린이(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며 옷을 입은 위로 00과 성기를 만져 수행하고, 같은 달 1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자어린이(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옷을 입은 위로 00과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부녀를 수행. ※ 형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범죄인(57세, 무직)은 2001. 3. 2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사이에 초등학교 4학년 기간제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2001. 4. 하순경 범죄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학생인 여자어린이(10세 5명) 등을 상대로 차례대로 여자어린이들의 뒤통에서 양팔을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범죄인의 음경을 여자어린이들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강제로 수행함. ※ 형량: 벌금250만원.

: 위 범죄의 000은 '젓가슴'이고, @은 욕정이고, 00은 '음부'이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범죄자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항들이다.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10가지가 넘는 폭력의 유형분류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의 진술서에는 수사기관의 남성중심적인 폭력적 욕망의 언어들을 볼 수 있다. 5세 아이에게서 '젓가슴'을 기술하는 수사과 형사와 친부의 연속적인 강제추행법에게 집유를 판결하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태도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남근중심의 폭력적인 욕망으로 해석되는 성폭력과 그에 대한 제도적인 눈감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죄자의 시선에서 보고, 성적으로 의미화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권력의 수행자로서 수사기관은 말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의 피해를 설명하는 표현방식에도 문제가 있다³⁴⁾. 현재 여성단체 홈페이지나 아동성폭력에 관한 논문들에서 피해를 10가지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디지털'섹스'', '항문 "성교"', '구강'성교'', '만지기', '노출' 등이 있다. 성폭력의 피해라고 하기에는 단어의 의미가 대단히 가해자 중심적이다.

그러나, 영어식 표현에서 온 성폭력을 표현하는 단어인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는 모두 'rape', 즉 "강간"으로 쓰여진것이다. '디지털 섹스'의 penetration이라는 것은 '침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손으로 성기 만지기'에서 handling은 한글로 의미를 새겨보자면 피해자인 아이의 생식기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어식 표현이 모두 더 잘 피해자의 고통을 나타낸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여성들이 쉽게 간과하는 남성중심적 언어문화에 대한 무의식적 수용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언어는 말로 발화되는 과정에서 남성의 언어 필터로 여성의 고통을 걸러내게 한다. 즉, 남성의 언어 필터이

34) <표-7>성폭력을 설명하는 표현들

영어식 표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폭력의 한글식 표현
virginal rape	貞 삽입
Exposure of abuser's genitals to child	성기 노출
Handling child's genitals	아이의 성기 만지기
Oral rape(fellatio)	구강성교
Digital penetration of vagina/anus	디지털 섹스
Other touching of child's genitals	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기 만지기
Anal rape(Buggery)	항문 성교
Masturbation of adult by child	아이에게 자위시키기
Showing child pornography	음란물 보이기
flashing	성기 노출

기 때문에, 필터 안에 고통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해를 말할 때, 걸러지는 내용의 말은 남성의 욕망을 수용하는 언어인데, 이것을 피해자가 피해의 내용이라고 말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범인이 항문성교를 했다. 라는 말은 주어(subject)가 둘인데 동사(verb)는 가해자의 것이 되는 것이다.

언어의 선택이 누구의 행위성을 강조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flashing' 플래싱'의 예를 들어보자. 영어로 'flashing'은 우리말로 '성기 노출'이다. 'flashing'의 경우, 처음에 그저 '플래쉬'라고 읽으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그려진다. 갑작스럽게 터진 플래쉬 빛에 '당혹스러워 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을 그럴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이러한 '플래시'의 기억은 본질적으로 그다지 유머러스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하게 여자 중 고등학교의 뒷산이나, 학교 등교 길의 골목에서 '학생 나 좀 봐'라는 말과 함께 실행되는 갑작스런 시각적인 공격은 소녀들의 사춘기에 남성의 성기가 가진 잠재적인 위협을 각인하는데 확실한 효과를 보증 한다³⁵⁾. 여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용담인 듯 혹은 재미있게 뒷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얼어붙었던 두려움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두려움이 '플래시'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플래시'는 그저 '바바리 댄'이나 '아담'의 귀여운 '노출 쇼' 정도로 해석이 된다. '바바리 댄'의 '성기노출'은 여성 앞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손도 대지 않았다'는 방식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성적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이기 보다는 단순한 이벤트 정도로 해석되어진다. 공공연히 공중파의 오락프로그램에서 바바리를 여민 남성이 '그 귀여운 표

35) 플래쉬의 불쾌감은 성에 관한 연장이 아니다. 즉, 한번도 남성의 성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어찌 가해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교 시절에 '플래쉬'의 경험이 있던 연구자는 결혼 이후에 남성 성기를 자주 접하게 되었어도 플래쉬의 폭력은 같은 고통을 주었다. 어느날 바로 내 집 앞에 '아줌마 나좀봐' 하는 말과 함께 눈 앞에 펼쳐진 당혹스럽고 혐오스런 아랫도리로 인해 일주일 간을 분노에 치를 떨었어야 했다(그러나 그놈을 잡아서 내가 받은 충격만큼 혼내주고 싶다는 분노는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다). 플래시는 여성에게 유괴가 아니라 분명히 "해를 주는 '가해 행위'이며 앞으로 어떤 폭력적인, 예를 들면 강간의 위협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성폭력인 것이다." (Kelly) 플래시는 그 행위 당시에 그 곳에 존재하는 여성을 충분히 경악하게 하고, 얼어붙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데도 남성에게 유괴처럼 보이는 행위는 여성에게도 유괴로 보일 수 있다는 답론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인식하는데 있어서의 남성중심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으로 관객의 공감을 사거나, 혹은 적어도 혐오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성폭력에 대하여 '무엇으로 명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누가 명명할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숙고해 보아야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고통이 남성의 언어회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여성이 성폭력을 자신의 언어로 명명하기'가 담론화 되지 못한 것에서 드러난다³⁶⁾.

1-2. 고통으로 말하기

사실 일상에서 이미 여성들은 고통으로 말을 하고 있다. 본 연구참여자로서 어머니들은 딸아이의 사건 직후, '눈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꼬집어도 감각이 없이 얼굴근육이 마비되거나, 얼굴전체가 시키면 기미로 뒤덮히거나, 혀에 백태가 끼고' 그리고 대체로 분노하고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내 말 표현은, 내가 당했으면, 그게 늘 괴롭다는 말이에요. 아이가 당했는데, 그 괴로움이 내가 당한거 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크게 와요. 내가 당한거는 나 혼자 수치스럽고 혹시 나 혼자 싸우면 되는데 아이가 당한 거는 두배로 세배로 와서 내가 당한거 만큼 복수를 또 해줘야 되고 분노도, 오히려 애가 더 청상인데 엄마가 분노로 끓고, 그런 상태죠. 엄마가 미친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내가 처음에 제 성격이 낙천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나는 그래, 좋게 될거야 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가졌는데, 이 부분 만큼은 낙천이구 뭐구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게 아니라, 마비예요. 내가 생각하는 능력 그 자체가 마비루 온데잡아요. 얼마나 멍청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편하구 한 날은 여보 나는 잠을 자긴 자는데, 일어나면 잔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새벽 네 시쯤 되서 내가 당신 이거 이렇게 생각해, (라고 물었는데) 그런데 남편도 대답을 하더라구요. -사례 G

자신이 아니라 아이가 당했는데 그 괴로움이 더 크고 그로 인해 머리 속에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없다. 딸의 말을 신뢰하는 어머니는 분노하고 복수

36) Kelly는 '성폭력의 연속선'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에 관하여 여성 자신이 정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과의 성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단순하고 정확한 어떤 지점에만 포진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n명의 여성이 각각 다르게 혹은 같게 느낄 수 있고, 또 같은 1명의 여성이 같은 경험이라도 자신의 주체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경험의 구체성이다. 서로가 알지 못한다 해도 여성이 갖게 되는 성폭력의 감각은 다른 여성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데, 이는 그 여성 자신이 경험을 전달할 수도 있고,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메스컴의 정보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하고자 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나요? 아휴 나쁜만인지 몰라두, 나 그놈 그거 한번 보구싶드라구. 내가 그 놈 찾으러 다닐 때 그런 생각했었어. 보면은 내가 그놈 그거 죄 물어버린다. 이런 심정이구 그랬는데, 그날 눈 앞에서 잡혀가는데도 그놈인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범인인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그거 물어버렸을지두 몰라. 근데 범인인줄 몰랐어요.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나오드라구, 내가 아는 형사가 데리구 나왔으면 아마 범인인줄 내가 알았을텐데. 내가 모르는 형사가 어떤 수갑을 찬 사람을 데리구 나왔드라구, 선하게 생긴 사람 그때 당시는 모르니까, 느낌이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뭐하구 뭘 죄를 짓구 저렇게 가나, 이래는데, 저만치 그 사람이 저만치 끌려가서 형사들 차에, 봉고차같은 형사차있죠. 거기 막 올라 타는데. 나 아는 형사가 평복을 하구 지나가드라구요. 그때서야 아차 싶은게, 저 사람이 애기 성추행 범인 맞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드라구

-사례 X

어머니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범인의 행색에 대해 '선하게 생긴 그때 당시에 선하게 생긴' 남자였다고 했다. 어린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공격한 그 남자는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이었다. 어머니가 '그 남자의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범죄자의 '그것'의 특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죄 물어버릴려고 하던" 그것, 어머니가 처단하고 싶어 하던 그것은 밖으로 보이는 그 선량한 얼굴 밑에 감추어 놓은 '자신의 딸을 공격한 그 남성이 가진 더럽고, 폭력적이고 악의로 가득 찬 추악한 성적 욕망'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처벌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만일 그 범죄자가 법에서 명명한 15년 이상의 형을 구형받았다고 해도 어머니에게는 아직도 처벌하지 못한 '그것의 문제', 즉 '폭력적 욕망'의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남는다.

'폭력적 욕망'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이의 '고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이의 고통을 숨겨버리고 -가해자가 주장한 행위를 근거로- 요식적으로 처벌될 때, 그리고 문화적으로 딸이 가해자의 부정성을 뒤집어써야 할 때 어머니는 절망한다. 남성의 성적 욕망의 폭력성은 남근 중심의 이성애 문화 내에서 정당화된다. 남성의 욕망은 대상과 '함께'가 아니라 대상에서 반사되어 버리는 자신의 모습의 충족감³⁷⁾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폭력이든 뭐든 결과는 남성

만의 욕망의 실천인 것이다(Koedt,1972). 남성 욕망의 실천은 제도로서의 이성애 사회가 갖는 성적 욕망의 메카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욕망을 처벌하고자 하는 감정은 감정에 대해 구형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어린 딸아이의 고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부장제 성문화의 여성억압성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 사고당사자에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다. “왜? 개가 좀 성숙해? 다른 애에 비해서 좀 성숙해?” 혹은 “개가 애가 좀 이상하대” 이러한 언설 들은 가장 나쁜 질문임과 동시에 성폭력의 본질에 관한 좋은 해답을 담고 있다. 남성의 폭력이 그 공격 대상자에게 가하는 ‘부정성(pollution)으로 물들이기’ 혹은 ‘생존자 부정하기(indefinite)’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이의 ‘입술’(이리가레이,2000)을 침범하는 행위가 전적으로 남성욕망으로만 구성되어있고, 그 폭력 사건 이후에 남성이성에 중심문화가 하는 일은 그 욕망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일임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질문 안에는 아이의 거부의 욕망, 기본적인 인간으로 갖게 되는 성적 욕망은 모조리 제거되어 있다. 즉, “그 아이가 남자의 욕망을 부추겼을 거야, 오죽하면 그랬겠어, 남성의 욕망은 당연하잖아, 좀 덜 여문(성숙한)줄 몰랐겠지”³⁸⁾, 이러한 의미에서 이성애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여성이 성숙해간다는 의미는 남성의 욕망에 길들여지는 정말 ‘부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캐롤 페이트만은 남성중심의 이성애적 가부장제 사회를 ‘본원적으로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성적 질서라고 설명한다(페이트만,1998). 이 ‘본원적으로 불평등한 계약’에 의거한³⁹⁾, 폭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이성애적 외음부 삽입 성교’를 단순히 자기의 욕망인 것처럼 가장하여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정적인’ 것은 역으로 현재의 ‘본원적으로 불평등한 계약’에 의거한, 폭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이성애적 외음부 삽입 성교’의 남성적 욕망에 대해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언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고통을 절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아이의 피해 그 자체

37) 여기서 그것의 정신분석학적 역동성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38) Emily Driver and Audrey Droisen,1989, 「Child Sexual Abuse, Feminist Perspectives」

39) 캐롤 페이트만, 「남과여 불평등한 성적 계약」

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폭력과 유인과 합정으로 실천되는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의 폭력적인 성적 욕망의 사회적 용인이다. 남성중심의 이성애 질서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욕망은 남성의 욕망이다. 여성은 개인적 욕구를 가진 평등한 성적 행위자가 아니다. 남성의 사회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삶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A.Koedt,1972).

사례 F가 저격한 것처럼, “고급 공무원까지 (지낸)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짓을 했겠냐, 진짜 아니지 않냐, 감이 안온다, 안믿어진다. 검사한테 그랬”(사례F)다는 그 판사도 마치 어린아이의 입술을 공격하는 행위가 다른 별의 어떤 종족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들처럼 은폐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해자가 화성이나 목성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고급공무원까지 지냈던’ 놀이방 주인할아버지이고, 유치원 셔틀버스기사이고, 선생님이요 심지어는 아이의 친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사회에서 추방된 자들이 저지르는 어떤 범죄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의 경계 안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가부장 사회의 남성들에 의한 것이다. 피해당사자가 특정 아이가 아니듯이 가해자의 가능성도 특정 남성이 아니라 남성 일반이다. 아이들의 인권의 입장에 있어서는 월권이지만, 동시에 남성들에게는 이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는 에너지를 발원하는 당연한 권리일 뿐이다. 성폭력이라는 말 안에는 남성의 폭력, 즉 욕망은 있으나 아이의 고통이 없다. 따라서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는 낄낄거리며 만족해하는 범인의 얼굴만을 상상할 뿐 놀라고 당황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 그것으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것은 남성의 욕망을 ‘알게 된 것’으로 등치시킨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남성의 그 문제적인 욕망에 침을 뱉지 않고, 욕망의 대상이 된 아이의 몸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한다. 오염되고 여성화된 몸은 경계 밖으로 내던져진다(버틀러,2003)⁴⁰⁾. 그것이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폭력, 남성권력이 바라는 성폭력의 효과이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느끼는 그 절망은 아이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

40) 주디스 버틀러, 2003,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1장.

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즉 어린 딸아이의 '죄 없음'을 성폭력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데 있다. 더구나 고소과정에서 범인에게 '혐의 없음'을 통보하면서 '국가'조차 등을 돌릴 때, 그 고통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채워지게 된다. 가해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는 여성억압적인 사회의 성적 질서를 알게 되는 것이다. 공적영역에 들어서며 고소과정을 시작한 것은 아이의 죄 없음을, 즉 오염되었다기보다 하나의 사고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고소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이성애 사회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어린 딸아이의 피해와 고통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근중심의 이성애 사회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폭력적 욕망'을 별주려하는 것에 대해 난처함을 표시한다.

2. 여성적 욕망이 거부되는 고통

아까 침에 얘기했잖아. 목숨을 칼로 위협했다면은 더 크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심정으로서는 근데, 수치심에 관한게 내 생각에, 수치심에 관한 것이 목에다 한거보다 더 큰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리고 다니는거고, 수치심이 더 겹쳐서 거기는 더 여자로서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나 그럼? 아하하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례 F

그러나 남성의 폭력적 욕망이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한다. 즉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말은 폭력적인 남성욕망을 거부할 수 있는 말의 정치성을 갖지 못한다.

특히 가해자가 친부일 경우에 '혐의 없음'으로 검사가 결정하는 순간 어머니는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만 한다. 여성에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절임을 교육하고, 남성에게 폭력이 곧 성관계임을 가르치는 곳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성적으로 온전하게 통제된다. 어린 딸의 사건은, 미래의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와 통제의 메카니즘'으로 인한 결과이다.

공적 영역과 일상에서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남성적 언어로 치환된다. 아동 자신이 성을 둘러싸고 갖게 되는 욕망은 의사소통되지도 받아들여지지지도 않는다. 가부장적 성문화 속에서 성은 폭력적인 것이 되며 폭력은 다시 성적

인 것이 되면서 성과 폭력의 구분을 하기 어려워진다(장필화, 1999).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즐길 수 있는 욕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제적인 욕망을 거부하는 것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폭력적인 남성의 욕망을 거부하고자 하는 여성과 아이의 욕망은 거부된다. 남근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구체적인 '몸'들의 고통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에게 금지된 성에 관한 담론과 실천은 어른에 의해 전수 된다. 이 때 전수된 성은 추상적인 것이고 교과서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개인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험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남근 중심의' 이성애사회에서 하나의 '정언명령'으로 남성에게는 성적으로 가해자의 능력을 여성에게는 가해를 수용해야 할 성적 위계질서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부터 여성에게도 대단히 다양한 성적 즐거움이 시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여성이 거부할 수 있는 언어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애들이 이렇게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되잖아요, 버릇없는 애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말대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당한 말대꾸라든가, 자기 의견을 표출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받아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애 각각의 특성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애가 애도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다 개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인제 내가 의도하는 대로 표현이 안 되는 애는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애로 키운 애로 (치부해버리는거지), 그런 의식들이 좀. 우리가 받아온 교육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많이 남아 있잖아요. -사례 나

사례 나와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타자로서의 아이들은 문화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통제' 된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 '계속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재미없다' 등의 가해자의 엄포는 피해자의 '성폭력의 고통을 말하기'에 대한 입막음의 실천행위'로 분명히 효력을 갖는다. 어머니는 딸의 '사건'이후에 그 사건의 피해가 자신의 일상 속으로 침투되면서 고통을 경험한다. 어머니와 딸이 범죄로서의 '남성욕망'에 대한 거부의 욕구와 실천은 가부장제의 법정과 문화에 의해 배제되었다. 이 거부가 용인되지 않음으로 인해 어머니와 딸은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전번에 통닭이 먹고 싶다 그러드라고요. 그래가지구 통닭을 시켰어, 통닭 가져오라그래라, 가져왔어요, 딴 때 같으면은 그 일 터지기 전 같으며는 지한테 돈주면서 내가 통닭 받아갖구 와 그러면은 지가 다 받아갖구 오구 이랬어요, (으음, 겁나죠.)아, 아유 글썽, 내가 나두 참 그런 거 보면 질아버리는 „인기봐, 나는 아차 싶었어, 통닭을 들구 문 앞에 서있는 거야 그 아저씨가 나는 돈을 준비를 안했는데, 애 통닭좀 받아라, 돈을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내 옆으루 붙는거예요, 애가, 근데 그때까지도 난 생각을 못한거야, 통닭 아저씨가 들구 있으니까 빨리 받아, 그러구서는 내가 받구 그랬더니, 애 아빠가 가만히 지켜보구 있드니, 애한테 대들 소리를 지르는거야, 바보같이 그거 받으려는데 안받구 왜 엄마 뒤편 살살 쫓아다니네. 돈을 건네주면서 그 남자 얼굴을 딱 봤을 때, 딱 그 생각이 딱 나는거야, 그때서야 인제 내가 생각이 딱 나드라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무소리 말라구. 그랬더니 나보구 애 감싼다구 또 막 뭐라 그러드라고. 애가 그걸,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드라고, 돈을 건네 주면서, 어머. 그 생각이 딱 떠올랐나봐. 근데 나는 생각두 없이 그냥, 야 너 통닭좀 받아라. 그런 적이 요번에 있어, 그래가지구 그다음부터 통닭시켜달란 소리 안해. 통닭 시켜달란 소리 안하구 왜, 왜 시장 안에서 왜 팔라서 튀겨서 파는거 통닭있죠, 감정 통닭 감정? (닭감정)어, 닭감정 그거 사오래요, 요즘 그거 사다먹어. 걸루 이사가서 얼마 안되서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내가 생각이 모잘랐구나 싶드라고. „생각을 못했던거야, 나하고 딴 때 대화를 이렇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하니까, 잊었겠거니 그렇게 했는데, 안잊어져 있나보드라고, 애 안잊어져있나봐, 내옆으루 와서 삭 붙드래니깐요, 애가 이렇게 사람 몸에 이렇게 비비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붙드라고. 어려서부터두 애가 좀, 사람 몸 닿는거 싫어하드라고 성격이, 아빠가 „있어서 자분자분한 성격이 아니야, -사례 H

일상 속에서 아동성폭력의 피해자인 딸은 배달시킨 통닭하나를 건네받지 못한다. 아이의 고통은 피해의 후유증으로서 남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특징한 시,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대한 통제⁴¹⁾로서 작용한다.

41) 이와 같은 일상의 통제로서 작용하는 성폭력의 후유증은 피터 홀 Peter Hall 감독의 영화 „스트레인저 (Never Talk To Strangers)“에서 잘 나타난다. 여주인공 사라의 자신의 일에 성실한 심리학자이다. 그녀는 다중인격장애를 연구하던 중에 토니라는 낯선 사내와 인연을 맺는다. 사라의 토니와 만난 이후로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일이 계속된다. 영화의 말미에 그 모든 사건들이 사라 자신이 만든 일이며, 원인은 그녀가 심리장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토니에 의해 그녀가 범인으로 호명되고 이 때 때맞춰 사라의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그녀의 병이 아동성폭력 후유증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 때부터 사라의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강하게 종속되어 있는 사라와 그것에 반발하는 사라, 그리고 현재의 심리학자로서의 사라 등, 다중적 심리의 사라로서 존재한다. 책상 밑에서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라는 다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라가 되어 아버지의 가슴에 총구를 발사한다⁴²⁾. 그리고 다시 자신의 낯선 애인을 총으로 죽이고, 모든 것을 두 남자의 싸움으로 마무리 짓는다. 그녀의 정당방위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마치

딸의 성폭력 피해 사건 이후 어머니가 경험하는 일상적 고통은 성을 둘러싼 문제와 일상에서의 생존을 둘러싼 문제로 경험된다. 첫째 성을 둘러싼 문제는 후유증으로서의 성에 대한 '부정'의 문제이다. 어머니는 '딸의' 피해의 후유증으로서의 '성에 대한 부정성'에 대한 '염려'와 '자신의' 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실의 충돌을 경험한다. 딸이 이성애 제도에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면서도, 자신 역시 그 사건 이후 남편과의 성적 관계가 사건 이전과 같지 않다고 말한다. 참여자의 대부분 성적 관계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한다. 그 거부가 '아이의 상처에 대한 상상적 회상' 때문이든지 혹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했으면서도 성적 쾌락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든지 간에, 어머니는 '이성애적 삼입성교'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다. 그 거부감은 싫고 좋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이성애적 성관계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폭력성"에 관한 인식 때문이다.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지점에 그 순간이 생각 날 수밖에 없드라고.....또 애기 아빠가 (성관계)할려구 덤비면 또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야, 그 생각이 또 나는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빠는 왜 그 생각을 안할까. 내 새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면은 자기 마누라한테 이렇게 못할 텐데. 막 이런 생각두 들구 그러드라고. -사례 B

[요즘두 부부간에 관계가 돌하고 그러나요, 성관계라든가? -연구자]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다르드라고요. (어떻게 저런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이런) 어,어 나 처음에 그 어떻게 할 마음이 생길까 이랬는데, 아 남자하구 여자는 생김거 부터가 다르구나...여자는 사랑이 없어두 하지만 남자는 한 번 본 여자두..남자는 여자랑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구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싸우진 않고 그냥 대충대충 그 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구 그러죠. -사례 H

둘째, 딸의 피해사건 이후 어머니는 일상에서 "성폭력의 연속선"(Kelly) 상

막 장면에 사라의 "다중인격장애의 치료는 병의 원인이 된 것, 즉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에 대한 용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긴다. 사라와 같이 자신의 고통을 원인에 대한 용정이 없을 때 여성은 심리적 장애를 치료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성애에 대한 강한 혐오와 남성과 연관되어진 성에 관한 부정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에서의 고통을 경험한다. 일상에서 사람들의 낙인의 시선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공포는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은 범인의 재범가능성과 해고지에 대한 공포이다. 실천으로서의 모성을 행하는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어 딸의 사회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 방법에는 직접 아이의 위기와 불안에 개입하여 범인을 색출하거나 고소하는 것이다.

[음, 아이가 요구를 했어요, 범인을 잡으라고? -연구자]

요구는 안했지, 요구는 안했어도 벌써 내가 아침에 애를 학교 데려다 주르는 저녁 3시 반쯤 되르는 핸드폰이 오는거야, 엄마 나 데리러 와, 그러니까는 알죠, 내가 지가 얘기를 안 해도 벌써 알겠드라구. 아 이거를 빨리 내가 잡아서 감옥에 갇혀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애가 안심을 하고 활동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에 그냥 무조건 그것만, 집착해서 다녔던거 같애, 잡는데는 거, -사례 B

그러나 가해자가 딸의 가족과 친족의 관계일 때 혹은 친부일 때, 아이와 어머니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주변에서 맴돌 때, 어머니는 그 피해를 정리하기 힘들다.

그 말(무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검사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랬어요, 애두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하면서 아이문제를 이야기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검사를 노려보면서, 나도 모르게 벌써 자리에 일어나서 난 아이를 다시는 아이를 그 집에 돌려보낼 수 없다구. 그 아이를, 내가, 사회가 두 번 죽이는 거라구. 그렇죠? 검사는 여태껏 조사한다구 애를 끌려 다니게 만들어놓구, 인제는 증거가 부족하다구 그 아이를 그 집으로 돌려보낸다는거는 그거 두 번 죽이는거 아니에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난 그 아이 난 절대 못 보낸다구, -사례 X

한번 와서 애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것 말고,, 지금은 와서 괴롭히는 건 없는데, 맞고소 때문에 힘들어, 자두 잔거 같지 않구, 악몽꾸구, 가위 놀리구 마냥 괴로운거 있잖아 왜... 피해자가 도망다녀야 되잖아 -사례 X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아서 공적 영역에 사건을 가지고 가지만 검사는 “애 사건이니까 신경 안쓰는 것” 같고, “2년씩 계류중이고” 가해자는 피해자 주변에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협박한다. 이렇게 아동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해 일상적으로 신변의 위협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여성이 성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NO’를 말하는 여성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딸이 남편 쪽의 친족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빌미로 어머니의 생계수단을 공격(사례X)⁴²⁾한다. 대다수의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단 몇 달의 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가 버젓이 이웃에 살고 있을 때, 딸은 길거리에서 자신을 공격한 그 가해자를 보고 “그 자리에 선 채로 오줌을 쏘”다(사례 F). 어머니는 이웃에서 “누가 왔다 갔다”(사례E)는 소리에 악몽을 꾸다. 어머니들은 모두 미래가 늘 불안하다. 피해자의 이 같은 현실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성적 피해의 고통이 사회적으로 의사소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의 고통 즉 살아있는 피해자 개인의 고통은 남성 중심의 언어 속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은 폭력적인 남성의 욕망이 성적 질서를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남성의 그 욕망에 거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가해자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욕구로서 피해자의 욕망을 지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의 고통은 의사소통되지 않는다.

3. 낙인의 부메랑 효과

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혹은 가늠하면서 어머니는 여성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은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분노감에 차있다. 그리고 가해자의 범죄에 처벌의 낙인을 찍기 위해 고소를 단행하지만 그 낙인은 다시 어머니와 딸에게 되 돌아온다. 낙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웅당 받아야할 처벌의 흔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낙인이란 그 고통이 범죄라는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성폭력에서 낙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찍힌다. 이 낙인은 남성 중심의 이성애 사회에서는 주로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고통이다.

42) “내 월급을 차압시켰잖아, 한 번 당해봐라 이거지”

‘주홍글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낙인은 여성의 욕망에만 가해지는 것이다. 범죄자는 딸의 거부와 귀가의 욕망을 무시하고 아이를 범죄자 자신의 욕망에 가두어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낙인으로 범죄자에게 찍히기 보다는 아이의 투명한 피해에 덧씌워진다. 더러운 욕망이 그 아이 옆을 지나갔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동원하게 만든다.

남성중심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성폭력범죄자들의 인권이 사회적인 화두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4년째 맞이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저항을 들 수 있다⁴³⁾. 성범죄자에 대한 사생활의 제한 조치로서 ‘신상공개’는 사회적으로 성폭력, 특히 미래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안전을 위해 범죄에 낙인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 낙인 조치는 사회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죄의 형량과 처벌 조치를 보았을 때,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앞에 가해자의 인권이 놓여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어머니들은 낙인에 맥없이 쓰러지지 않았다. 처음 고소를 결정하고 가족 외부의 영역에서 사건을 사회화시키고자 한 그 순간 어머니는 이미 낙인에 대해 자유로워졌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여자로서 사는 것, 여성의 성이 평가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영역으로 사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의식을 지배하는 남성적 담론에 반대하고 낙인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장에서 법과 대면한 어머니는 낙인에 ‘찍힌 것’이라기보다 낙인의 토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낙인과 낙인의 부메랑은 다르다. 낙인은 성적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자신의 고통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시선으로 정의 내려지는 것이다. 반면에 낙인의 부메랑은 자신의 고통을 내면화하지 않고 외부로 알려내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려는 실천 속에서 만들어지는 고통의 객관화된 모

43) 범죄자의 가족과 범죄자의 인권이 분리되어야 한다. 가족이 무슨 죄가 있나, 그런 어른이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가족 내에 남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리적 경제적 지원과 책임을 져왔었다. 그런데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같이 책임지고 같이 치료받고 가족 모두 성에 대한 진보적 사고를 배우면 되지 않겠는가.

습이다. 즉, 낙인을 모두 다 떼어버릴 수는 없지만, 낙인이 어디에서 되돌아오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낙인의 부메랑은 범죄자의 목을 베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낙인이 어머니에게 덧씌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낙인의 내용이 가부장제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낙인이 되돌아오는 지점은 앞서의 고소과정의 가부장성과 판결문과, 한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서 되돌아온다.

낙인효과를 깨는 것은 우리 피해자 부모들 바램 이고 노력인거죠, 그보다 앞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재 가해자의 형태 그리고 가해자의 법적 대응들, 그리고 어떤 공통된 행동들을 밝혀내고, 아이들의 상태랑, 아이들이 겪으면서 자라면서 겪는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치료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병원 치료라든지, 그것과 더불어서 그 아이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거요, 그것들은 아이에 상태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좀 낙관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성폭력 사건에 관한 후유증들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겨내고 자기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고, 비관적인 아이들은 후유증으로 그야말로 뭐 몸을 파는 것들을 쉽게 결정을 해서 그런 행동을 옮겨질 수 있을 테고, 건강하게 자라난 마음을 가진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극복하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성도 있겠지만, 부모나 사회나 이런 기타 제반 것들이 그 아이를 물고 갈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형태가 일어날까. 그것들이 문제고, 그리고 대부분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나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성추행에 실패는 가해자랑 피해자랑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해자들은 일정정도에 시스템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끝까지 버틸려구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인 보호를 거꾸로 억으로 받아내는거죠, 이러한 어떤 공통된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그것을 보고 상처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는 거죠, -사례 라

사례 라의 말처럼 어머니의 고소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낙인 효과’를 깨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아이의 상처에 더 신경을 쓰고,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하여 살아 있는 아이의 몸을 부모로서 책임지고자 하는 모성을 실천하였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가해자와 공모 중인 집행관의 모습도 보게 된다. 가해자는 남성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스템

으로서의 가부장제도 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에 있어 보호받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보호를 거꾸로 역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어머니와 딸은 낙인에 의해서라기보다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에 의해 '상처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인만 적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함의는 폭력으로 오염된 몸으로 '해석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낙인에 대해 어머니들은 스스로 낙인찍힌 몸으로 주저앉은 것이 아니다. 어머니들은 낙인을 부메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성적 낙인이라는 부메랑이 공적 영역에서 누구를 가해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는 볼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된 것이다. 비록 낙인의 부메랑이 범인의 그릇된 욕망을 말끔히 자를 수는 없었고, 또 다시 피해자의 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것은 낙인이 아닌 '낙인의 부메랑'이다. 어머니들은 이 부메랑이 되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지적하게 된다. 그것은 아이의 몸이 법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목적이라는 관점을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고소과정을 통해 자신과 딸의 상처를 공적인 영역에서 말하지만, 그 증언은 고통으로 이해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피해의 고통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사회가 남성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의 의미로 처벌이 되지 않고 모녀에게 낙인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고통과 낙인의 토대가 남근중심의 이성애 제도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V. 고소과정에서 전환되는 어머니의 의식

어머니는 고소과정을 마치면서 혹은 아직 사건 계류 중이어서 시작도 못했지만,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의 공적영역 속에서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된다. 공적영역에서 성폭력의 고통을 말하기를 가로막는 것은 말하기 자체가 이미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1. 살아있는 딸의 존재를 명명하는 여성/어머니의 시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주위로부터 흠이 있는 몸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그리고 "사건을 시작하면서 사례의 어머니들은 모두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고"(사례 가) 사회의 외부로 내던져진 것다는 소외감을 경험한다.

공적영역에서 가해자에게 던진 '낙인'은 '오염'의 형태로 어머니와 딸에게 되돌아왔다. 남성중심의 이성애 사회에서 성폭력의 피해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여성 개인을 문제화하는, 즉 '순결하지 못하게 된 몸'으로 의미화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문제가 된다.

공적영역에서의 '고통을 말하기'를 경유하면서 어머니가 다다른 가부장제 사회의 경계에서 딸의 앞날을 염려하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가부장제가 명명한 '성폭력에 의한 어떤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몸으로 '살고 있는' 구체적인 개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남성중심의 이성애사회인 한국사회가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폭력과 '순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실존체로서의 딸의 모습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1-1. 상처로서의 '낙인'에 대한 비판

한편으로 너무 일찍 남성의 성적 욕망에 경험을 당한 자신의 딸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딸 아이의 '실존' 자체를 부정하

는 것이 아니다. 남성의 권력과 욕망의 실천이 그어놓은 경계 안에서는 '순결하지 못한 것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상공개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 중에 친딸에 대한 성폭력의 원인을 기록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져있다. "범죄인(41세, 자영업)은 처와 싸움이 잦고, 처가 일을 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 처와의 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자, 2000. 8. 초순 21:00경 범죄인의 집 안방에서 딸인 여자어린이(12세)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딸이 반항하자 재단용 칼로 딸의 발등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 발을 듣지 않으면 칼로 너의 발등을 찌어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딸의 반항을 억압한 뒤 딸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1999. 5. 초순경부터 2000. 10. 5경까지 사이에 총 79회에 걸쳐 딸인 여자어린이를 강간함. 형량 : 징역7년" 이 진술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가해하면 가중처벌되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79나 강간함에도 징역 7년형을 받을 뿐이다. 게다가, 자신의 범죄의 이유를 '성관계에 응하지 않은 처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폭력적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설은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사례 어머니들 중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우리가 그랬지, 니가 니 서방한테 잘 안대(성관계에 잘 응하지 않았으니까) 했으니까 우리 애한테 그 짓을 한 게 아니냐고"(사례 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또한 남성의 성적 욕망에 대해 용인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거는 우리에 의식 속에 너무 그게 강하잖아요, 내가 말을 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보다, 나를 비난할 사람이 더 많고, 내 편에 서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의식구조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첩피한거, 내가 잘못된거, 내가 그런 이야기를 설사, 한다 해도 누가 내 편이 되어 줄건가, 먼저 그 계산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실이 그렇고, 그러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인 가해자는 다 남자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뒤에서 더 큰 가해자를 만드는 사람은 또 여자예요,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비록 여자지만 엄마이기도 하지만은 가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에 성충동에 인해서 그 일을 저질러서, 아마 반성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큰 가해자는 사회 절반을 차지하는 엄마,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어떤 남편 있는 여자가 있고, 또 혼자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유부남하구 눈아 맞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행위까지 바람이 나서 하다가 들켰어요, 그럼 동네에서 누가 쫓겨나요? 혼자 사는 여자가 쫓겨나잖아요, 모든 비난은 누구한테 가요, 혼자 사는 여자한테 가잖아요, 니가 행실을 잘못을 했으니까, 니가 우리 남편 꼬여냈으니까 니가 꼬리를 쳤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구 모든 비난은 그 여자한테 가잖아요, 그거 진짜 나쁘지 않아요? 정말 나쁜 사람은 굳이 죄를 따지자면 그 남편도 비난이 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더 나서서 비난을 하구 더 피해자임이나 피해자한테 더 돌을 던지구, 의식 자체가 너무 잘못된거 아니예요,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더 머느리 구박하구, 쫓쫓쫓, 같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두 머느리 시집살이 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A

어머니는 이미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지위에 관해 알고 있다. 여성이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그것을 공론화하여 문제삼을 때, 그 문제를 같이 풀기보다는 피해자인 '나를 비난할 사람이 더 많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남성중심의 문화 때문이다. 성적 피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나쁜 것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고 남자고 여성에게만 돌을 던진다. 어쩌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쁘다.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지 않는가. 게다가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또 어떠한가. 어머니로서 딸의 편에 서기보다는 아들 편에 서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재생산해내고 있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성폭력의 피해경험이 없을 때는 여성은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심해야 하고, 이미 '오염되었다면' 자신의 피해를 들키지 않고 그러면서 '또 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사회적 존재로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계선⁴⁴⁾은 딸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남성중심성

44) 어머니의 이러한 인식은 영화 '도그빌'의 시선에 비유될 수 있다. 영화 '도그빌'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들의 대사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가식적이고 과장된 행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관객의 시선이다. 관객은 경계가 없음에도 경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연기하는 연기자들의 연극을 통해 가부장제 이성에 사회가 타자를 지배하고 다루기 위해 그어놓은 갖가지 경계들의 추상성을 볼 수 있다. 가족, 학교, 노동의 현장 모두가 문과 경계가 있는 듯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연기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역시 약속일 뿐이다. 그레이스를 강간하는 그 장소는 누구라도 구해줄 수 있는 편히 보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그빌의 어느 누구도 그레이스를 도와주지 않는다. 마치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연기자들의 연극에도 관객은 마을에 등장한 한 타자를 소외시키고 다시 폭행하는 것은 개별 남성이 아니라

의 문제라는 점이 공적영역에서 어머니와 제도 사이의 말하기 공방을 통해 밝혀졌다. 여성에게 '지키라고' 있는 '순결'은 가부장제 사회의 명령이지만, 지킬 수 없는 것 또한 이 사회의 남성중심성 때문이다. 남성중심의 이성애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는 두 종류의 여성이 있다. '순결한 여자'와 '타락한 여자', '창녀'와 '요조숙녀'. 또한 이러한 이분화를 통해 경계는 작동한다. 성폭력의 공격을 받은 딸의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딸들이 그 침해의 경험을 자신의 욕망인 것으로 오해하여 '타락한 여자'로 지목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여성을 통제하는 순결의 담론을 둘러싼 경계 자체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눈앞에서 살아 있는 딸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자신의 딸은 가부장제라는 낙인의 시선에 의해 추상화되거나 지워진 존재가 아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아이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 일로 기분이 더러워질 때도 있는 것 같지만"(사례 H) 여전히 잘 해나가고 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괜히 그냥 내가 미안한거. 항상 근데 아마 그게 밑바닥에 깔려서 애가 원하는 건, 애가 무리하게 타당성이 없게 때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애가 워낙에 잘 하니까 개가 원하는 거를 잘 맞춰주는데. 그래 그냥 지 기분 맞춰주느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개 보면 괜히 미안해요. 그 아일 보면 그냥 편하고 가슴 아프고, 땀하고 내하고 인제 평생 가져가야 될 숙제인데. 그때 내가 어른이었어도 내가 아무 것도 못했을까 같은데 개를 보면 내가 차라리 나 였으면... 지금도 어떤 때 자는 거 쳐다봐도 안쓰럽고... 말은 안하지만 지 속이 어떨까 싶구. 말 하구 싶을 때 어떤 때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 하구 싶은데 두 안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 잘 모르겠어요. ...내가 특별하게 애한테 뭐 개한테 많이 맞춰 줄러구 애를 많이 쓰는데. ...이제까지 커왔던 만큼만 커주면.. 생각을 안 하고 싶는데 그냥 생각이 나요. 문득문득 그럴 때는 내가 화가 나서 죽겠어. 그냥 화가 나 막.. 애가 아프다 이 생각이 조금 지나면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야. ...떨러죽이고 싶은데.. -사례 H

어머니는 자신이 딸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스스로 딸의 고통은 어머니와 자신이 평생을 가져가야 할 '숙제'라고

마을 남성과 여성의 공모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도그빌은 아무런 경계도 없이 악한 고리에 서 있는 외곽 지역의 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전유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근 중심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관객이라면 이 경계의 기만성을 볼 수 있다.

말한다. '숙제'는 하나의 과제물이다. 어머니에게 딸 아이의 피해 사건은 단지 고통에 머물러 정체되고 개인적인 명으로 가슴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서 해결해 가는 '숙제'로 질적인 변화를 하였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위계적인 내혼을 일삼던 어머니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다. 이 때 어머니는 다른 모습의 어머니로 등장한다. 어머니는 어머니라기보다는 같은 시기의 같은 고통과 문제를 가진 동지적 혹은 '자매적'인 관계로 딸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딸에게 미안하다. 그래서 남성의 폭력을 용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고통'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과거의 어머니라기보다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기하고 있는 새로운 어머니로서 관계 맺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말한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이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상처받은 딸들에게 줄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주변화되고 상처 입은 여성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순결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발견한다. 어머니는 순결하지 못한 몸이어서 남근중심의 성적 질서의 경계 밖으로 던져진 여자들이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머니는 여성의 몸을 구분하는 남근중심의 '순결'이라는 경계가 허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경계의 허구는 살아있는 자신의 딸을 긍정하는 어머니의 시선에 의해 보여 지는 것이다.

상처 입은 딸과 어머니에게 소외감을 강제하는 것은 경계가 아니라 경계의 허구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허구의 경계를 이용한 여성의 성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 사회의 남근중심의 '순결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나는 그 뒤로 아들 갖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이 터진 뒤로는 그 인간하고 사이에 아들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이 들고, 그러고 다른 집 아들 있는 게 부럽지도 않아요, 이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흠호호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왜냐면 그 애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이요. 친척집에 온 남자애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생각 하는 거죠. -사례 X

내가 지키라 그러면 그럼, 난 뭐야, 그렇게 될거 같고, 그렇다고 지키지 말라 그러지도 못하고. 애가 부담되겠구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서두 성교육을 시킬라 그래도, (누가 하느냐

에 따라 얘기가 다르겠죠)학교에서두 물론 중요하지만, 여자도 문제지만 남자를 교육을 더 잘시켜야될거 같애. 진짜 그걸 느꼈어. -사례 H-

어머니는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솔뚜 쟁과 자라들'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은 자라서 이 사회의 가부장제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 때부터 학교나 가족 매스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남자아이들은 가부장이 되는 것을 훈련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훈련에 대해 어머니들이 제동을 걸고 성평등한 교육을 아들들에게 더 잘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적이고 성평등한 교육을 여성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은 남성의 몸과 욕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구체적인 몸들에서도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인정과 승인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공적영역에서의 '말하기'를 통해 갖게 되는 것은 시선이 다. 가부장제 사회가 낙인찍힌 몸으로 호명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딸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는(alive), 살아가고 있는(living)몸임을 드러내준다. 동시에 이 시선은 딸을 '부정'하는 가부장제의 시선에 대한 저항적이다. 어머니는 딸의 사고로 인한 고통과 피해의 설명에 대해 공적 언어로 말하기에 대해 체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하기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경계 밖에 내던져진 자의 시선으로 경계 안을 바라보는"(Harding, 1995) 하위주체의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타락'이라는 경계선이 갖는 '남성중심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는다.

어머니의 시선의 중요성은 딸의 정체성 형성과 연관되어져 해석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자신의 딸을 볼 수 있고, 그 아이를 살아있다고 호명하는 작업을 통해 가부장제가 그 아이의 몸에 그어놓은 경계를 지우는 효과를 갖는다.

1-2. '타락'에 대한 염려

어머니들이 딸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갖게 되는 염려로서의 고통은 아이

가 성적으로 '타락'하여 인생을 망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나중에 커서 결혼이라두 하게 되면 그 일루 인해 어떤 부부관계에 안좋은게 ??있지 않을까. ...그 면에서 너무 예민해가지구 나중에라두 혹시 애가 그런 경험을 할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어서 결혼 생활 잘하고, 그건 그거구 이건 이거다 하고 딱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구 혹시라두 또 그런 경험을 할 때 그 기억이 나서 서로 사이가 안좋아지면 어떨하나 서로 멀어지면 어떨하나,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애가 커서 결혼을 했을 때 그걸 경험하게 될거아니예요. ...그게 ...지금 상태로는 ..개가 어떻게 커갈 거라는 걸 내가 장담을 못하니까, 고 당시엔 고게 제일 겁나고, 어떤 가정하에 걱정을 할 수 있는건 지금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남자 친구하고 사귀구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애가 어떻게 반응을 할 까, 설명이 안되요. 대부분 생각하기에 엄마아빠는 안하는 줄 알잖아요. 저두 어렸을 때 그런거 물렸는데. 쉽게 말해서 엄마아빠 만나서 사랑해서 얘기가 생긴다는 이런건 알지만 그것까지 생각을 안하거든요. 애는 컸으니까 또 인터넷도 있으니까 ...그 느낌하고 그 기억을 다시 또??/하면 어떨하나...그 일로 인해서 애가 사는게 틀어지면 어떨하나. -사례 H

(목소리를 죽여서)그런데 우리 애가 전엔 안그랬는데. 남자 친구들을 자주 새겨여, 예?, 왜 그런거지?. 나 그거 궁금해주졌어. 처음에 일이 터지구 나서, 지네 반 애들이야 그래두, 커피를 했다 그러드라구, 커피를 끼구 다니드라구 그러더니 얼마 있드니, 또 잠잠해졌어 손가락에 반지가 없어, 반지 어땀니 그랬더니 헤어졌대. 결국은 얼마있다 또 다른 남자애하구, 남자애들 하구만 땀기드라구 여러명이 땀기는 게 아니구. 딱하나 새기면 개하구만 땀기 그러다가 또 헤어지드라구. 그러더니, 일루 이사 내려왔잖아요, 옆동에 또 자기네 반에 남자애가 있드라고 또 개하구 요즘 다녀. 난 또 그것도 불안한거야 지금, 개가 그렇지 않았었거든, 지가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성격이 아니야. 성격이 내성적이야, 찾아와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요즘엔 지가 찾아가더라구 지가 개한테 전화해서 아침에 학교갈 때 데리러 오라고, 그러고 같이 가구 요즘에 그러더라고, 그게 경기래네 난 경긴줄 몰랐네. 왜 자다가요, 아아오 그러더라고, 왜그래 그러구 보니까 애가 다리가 뻣뻣해지드라구.소릴 질르드라구 아아아 이러드라구, 그래가지고 막 주물러주니까 자드라구. 그래서 나는 개가 왜 자면서 쥐가 나나 그랬는데, 그게 경기래요. 경기래네. 아아아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다리가 뻣뻣해지드라고, 애가 속에 뭐를 담고는 있는데 애가 얘기를 안하는거야. 나한테 절대 그런 얘길 안해요. 그러고 또 개가 나한테 자주 짜증을 부리고 그러니까 나두 못 물어보지, 물어볼 수가 없지.

...나는 새기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안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거야, 재가 위험한데 까지 가지 않을까. -사례 X

‘타락’이라는 경계는 어머니의 ‘염려’를 만들어낸다. ‘타락’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몸에 가하는 ‘생존자부정하기’의 가부장적 모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성폭력의 피해를 겪은 딸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성인식과 태도’가 형성된다는 우려에 관한 것이다. 어머니들은 아동성폭력의 피해로만 설명되는 이러한 ‘후유증’에 대한 염려로 고통을 경험한다. 어머니는 혹시 아이가 ‘그 일’로 인해 일상을 침해받고 힘들어할 것에 대해 걱정한다. 그리고 성폭력의 피해로 인해 성적으로 ‘타락’하여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성적으로 아이답지 않거나, 그 후유증(예를 들어 ‘매매춘’같은⁴⁵⁾)을 앓을 것에 대해 염려⁴⁶⁾한다. 남자친구의 문제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좀 빠르다거나’, ‘있을 수 있는 일’ 품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거울 앞에서 멧을 내는 딸의 심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선불리 야단을 칠 수도 없다.

어머니가 염려하는 ‘타락’은 가부장제 사회가 명명한 ‘그 타락’이 아니다. 딸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혹은 사고를 사적 영역에 숨겨놓았을 때 막연히 갖고 있었던 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성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헤픈 여자가 되는’ 그런 추상적인 타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타락은 어머니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게 된 이성애 사회의 ‘문제적인 성’에 대한 대처에 자신의 딸이 실패하여 ‘몸을 다칠 것에 대한 염려’이다. 법이 정한 ‘아동’의 나이에 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자에게 성적 공격을 경험함으로써 이성애 사회의 성이 갖는 폭력성을 매개로 ‘남근중심의

45) “그런 연구가 있긴 한데, 그건 그 현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포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통계를 그렇게 잡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접근이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매매춘여성을 연구하면서 나온 것들 이잖아요.”-사례 3,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통계는 신뢰도에 있어 매우 떨어진다. 게다가 이러한 우려는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생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머물러있을 때의 문제이다. 따라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치료되지 않는 피해에 관한 것이다.

46) 성적인 일탈에 대해 본 연구 사례의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염려가 있었다. 딸의 피해연령이 10대인 어머니들은 딸아이가 전에 없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문제에 대해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해 성에 대해 ‘밝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걱정하곤 했다.

이성애질서’를 배웠다. 이는 딸이 처음으로 갖게 된 성에 관한 경험이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거나 은폐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비판되어져야 할 섹슈얼리티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서의 경험을 의미한다.

경계의 설정 자체도 문제이지만 경계 밖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계는 움직인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결혼하여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경계 밖으로 내던져졌다. 이때 경계 안은 남편, 아들이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 경계는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성폭력이 어린 딸을 경계 밖으로 밀어냈다면 어머니는 경계 밖에서 경계 안을 비판하는 행위를 통해 경계 너머에서 딸의 존재를 호명해주어야 한다(비틀러, 2003).

따라서 ‘타락’에 대한 어머니의 염려는 가부장제가 설정한 ‘경계’를 인식하면서 변화한다. 어머니는 딸의 상처가 타락과 연관지어 사고하는 것이 부당함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성폭력을 양산해내는 남근중심 사회의 가부장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성애 제도 안에서 어머니와 딸은 힘든 법적 투쟁 속에서 만난 동지와도 같다.

성폭력의 문제는 이제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의 딸만이 가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딸을 단순히 문제를 담보한 ‘작은 여성’으로 보기 보다는 ‘문제를 알고 풀어 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할 사람’으로 딸과의 관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순종적인 여자, 이런 여잔 안되고, 전문적인 일을 가진 담당하게, 결혼을 굳이 안해도, 스스로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는 당당한 여자, 그런 여자. 제가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구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순 없겠지만, 우리 하나는 그렇게 안됐으면 -사례 C

늘 지켜보면서, 내가 들은 얘기로 열세살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이런거 늘 지켜보고 난 오히려 오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친구 사귀는 얘기는 내가 더 들구 싶어서 안달을 댈다든가. 뭐 개는 뭐 좋아해. 뭐 이런, 개 관심사에 내가 동조를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 -사례 G

살아있는 자신의 딸의 성을 둘러싸고 어머니는 그 아이가 스스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아이 자신의 성에 사고의 경험을 교훈으로 해석함으로써 딸과 자신의 피해자로서의 고통의 경험의 의미를 생존하고 있는 삶에 의미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2. 새로운 어머니의 의미

딸의 성폭력을 고소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기존의 모성과는 다른 모습이다. 즉 사적 영역에서 자의권 타의권 남성적 성문화를 재생산하던 모성이 그것에 저항적인 모성으로 변화한 것이다. 모성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성에 관해 제도적인 모성을 수행하던 것에서 가부장제의 성담론과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실천으로서의 모성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나아가 모성의 확장은 고통 받는 여성에 대한 어머니의 시선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저항적인 모성인 '여성/어머니'의 시선은 공적에서 고통 받는 여성의 존재를 보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여성/어머니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담론화하는 것이다. 여성/어머니의 말하기 속에는 남성이 폭력으로 제압하는 여성의 존재에 대한 거부 의미 담고 있다. 그 거부의 말하기는 고통이 하나의 언어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1.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된 모녀관계

어머니는 사건화 이후에 전과 같은 방식의 모성을 실현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자신의 혼자 생각보다는 딸의 사고와 삶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해야 하는 관계로서 발전시키고자 한다.

[억눌려졌다는건 뭐예요, 보수적이라고? -연구자]

예, 보수적이죠, 보수적이고 굳이 거기에 대해서 걸로 표현을 들고 자란 적이 한번도 없었죠. 엄마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들은 적도 없는 거 같고, 물어보면 엄마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러운 일일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호기심도 제가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편하게 그냥 아무 탈 없이. 호기심도 많았던 것도 아니고, 살아왔던 거 같아요. 엄마가 특별하게 억누르기 보다는 억누르지도 않았지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냥 무지하게 살아왔던 거 같아요. 특별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 관심 그런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제 딸 한테는 억눌러서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 사례 C

.....
 컷을 때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그 일이 있을 후에, 저는 제가 잘 한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00 몸은 00가 지켜줘야 된다고, 00가 손가락이 아프다면 손가락이 하나를 미워하겠지, 00가 못지켜줬으니까. 지금은 쉬아란 말을 안하거든요, 그 말이 너무나 독특해서 다른데서 써버리면 알아버릴까 싶어서,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지금은 잠자라고, 여기서 잠지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고추라고 말하고, 아직 뭐 음부 이런 말은 못알아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이런데도 똑같다구, 하나가 아프게하거나 싫은데 만지거나, 그러면 여기도 싫어한다구, 악바르고 그러면 아파한다고 하나가 몸은 하나가 스스로 지켜줘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한테 고마워 한다고, 머리가 아프거나 손톱이 더럽거나 얼굴이 더러우면 깨끗이 씻어주는 거처럼, 그걸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처럼. 거기 쉬도 그렇고 고추도 엉덩이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죠. 싫으면 누가 와서, 만져보자, 하나를 싫은데 안아보자 그러면, 하나가 싫으면 '싫어요'라고 말하고, 하나 몸은 스스로 몸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금은 그 정도고, 나중에 알아들을 때 되면, 얘기를 해줄려구요, 어떻게 해서 뭐, 좀 커야.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저도 아직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어떻게 생긴다는 그런걸. 제가 살아왔던 거 억눌러서 자라왔고, 그거 자체를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다 라는, 그렇게 억눌러 살아왔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오히려 표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례 C

사례 C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 자신과 어머니의 모녀관계에서 성은 말하기 창피한 것이고 여자는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딸에게 가르치는 어머니의 성교육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성에 관한 것조차도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거나, 될수록 딸의 처녀성을 '단속'하는(귀가시간의 통제, 남자는 늑대로서 조심하기, 혼전순결이 결혼에 예의라고 가르치기 등) 가르침이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 어머니는 딸에게 그와 같은 가부장제적 성에 관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모녀 모두에게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남성중심의 성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적 침해는 조심과 단속 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이성애적 관계와 결혼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지를 염려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러한 어머니 자신의 반응을 비판하며 갈등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딸의 문제를 통해 여성이 성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고 성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된다. 오히려 여성들이 자신이 성적으로 억눌려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제기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공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를 하고 딸과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관계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고통스런 말하기를 통해 사적인 제한과 이 대응하기 수행의 측면을 넘어 모성을 실천하고 있다. 이 때 어머니는 딸의 어머니로서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새로운 모습의 여성/어머니이다.

2-2. 대항적 모성 ; 딸의 어머니

여성이 공적영역에 출현하는 것, 특히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다. 고소과정 전반을 통해 수사기관과 문화 속에서 여성의 고통이 말해지는 것의 그 '힘들'은 여성의 고통이 쉽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적영역에서 이 고통의 말하기가 행해지기 어렵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부장제 권력의 실천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성폭력의 피해를 공식적인 언어의 장에 가지고 나온 '어머니의 말하기'는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통제하는 중심적인 방식으로서의 '폭력으로 말하기'에 대한 대항으로서 의미지을 수 있다.

고해성서 안했어요, 여지까지 안했어요. 나지금 나 성당 안나가. 그 일 터지구 나서 한 2주는 내가 나갔는데, 못나가게 생겼드라구 내가 지금 너무 사람들 미워하고 속안에 악이 받혀있기 때문에 성당이라는 데는 왜 웅서하라 그러잖아요. 웅서가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구. 웅서가 안되는데, 그래서 나 지금 안나가고 있어. 왜냐면 미사보구 떡이라구 받아 먹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남을 미워하지 말구 모든걸 이렇게 포용력있게 해구서 그거 받아 받아먹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받아먹으면 미사에 의미가 없어, 성당에 갔단 의미가 없거든 나

는. 그래서 아이 차라리 나 안가구 있는거야. 애만 지금 다니는거야. -사례 H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 까지 해봤어요. 말끝에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이런말을 했거든요. 만일 내가 당했으면 난 입 다물었어요. 나 다물었어요. (왜요?) 그게 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니까. 분명히 가정은 깨질거구요. 백프로, 제가 이 일을 한번 치르구 두요. 내가 당했으면 나는 경찰서 안가 지금 너무 잘 알구 더 잘 아는 이 상태에서는 난 경찰서 안가 차라리 나 혼자 치료해. 그럴정도거든요.

...아이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그리구 정말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내 아이 밑에 둘은 누가 어떻게 지킬거예요, 못지켜요. 내가 우리나라에 성폭력 실태를 보구 내 아이가 경험한 걸로는 내 그 밑에 두 아이를 못지킨다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해야되 내지는 아니른 내 아이를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 막을 수 있을지두 모르잖아요. 지금 한달 반이 저한테는 처절하거든요. 아이가 아파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도 봤지만, 그 한편으로는 정말 이 나라는 가해자 천국이다. -사례 G

사례의 어머니들은 딸의 피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가해자 천국이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좀더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머니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딸을 기존의 가부장제를 세습시킬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대항적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아동성폭생 사건에 대해 집단적인 대응을 한 이후 주민들이 달라진게 뭐여? -연구자]
없어여, 이시도 대부분이 나가고, 공동대표가 지금 사는 사람이 두 명이 살아요, 세 명이 나왔으니, 나머지 주민들은 더 많이 갔겠지, 근데 대신에 유아 성폭행에 문제를 누구보다 잘알고 있어여, 아이들도 그렇고, 아마 저는 씨앗이 뒀을거라고 믿어여, 어디 나가면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적어도 덮어두거나, 아니른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 아는 사실들을, 그리고 이미 승리에 맛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디서든지, 이일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동부 아파트에 아이들이나 참여를 했던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적어도 보이지 않는 힘들음 가졌을거다, 그래서 우리 왜 성폭행 당한 아이들 공통점이, 엄마가 개보다 힘이 세, 오빠보다 힘이 세? 아저씨보다 힘세? 선생님보다 힘세? 힘에 논리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너 괴롭히는 애 있음 말해 우리가 아저씨 아줌마가 다 가서 디지게 패버릴거야, 얼른 말해봐. 믿지? 너 엄마 아빠 힘센거 믿지? 믿어, 언제든지 얘기해, 죽여놓거야 너 누군가 건드리면, 이래도 애들이 그럴수 있다고 생각을 하

조.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재보다는 세졌다,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심어줬다. 그런거죠.
- 사례 라

그러니까 여기 살고 그 때 거기 조금이라고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했던 엄마들에 아이들은 성폭력범은 안될거라고, 개네들은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개네들이 저 할아버지가 어린 애들에 성기를 만지고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죄가 됐다, 그거를 자꾸만 만지고 애들이 싫어하는데도 만지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렇게 돼. 그러면서 그런 성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할거예요. -사례 다

근데, 대부분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막 직접 나서지는 안아도, 그게 나쁜 일 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진짜, 많더라고)그러니까, 서명해주고 이런 게 거기 서명에 전화번호하구, 주민등록 번호하구 그런거 다 쓰더라구요. 근데 그런 것을 여기서 한 네, 다섯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한번도 그거가지고 뭐 짜증내거나 이런 사람이 한명두 없어요. 아직도 안끝났나 그러고, 안 잡혀갔나 그러구, 해주는 사람들은 다 해줘요.

우리가 이거 하나 해가지구 좋아질거라는 생각은 안되지만, 점점 좋아지구 이런 의식을 가지구 살면 좋아질거라는 그런 믿음은 생기더라구요. 이 언니가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계단 하나는 완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한번에 뭐 시멘트 콘크리트 쌓듯이 딱 해가지구 쌓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주춧돌이 되 가지고 기반이 되면 어느정도 좋아질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음)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의 의식두 좋아지구 그러구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생각두 바뀌구. -사례 라

자신의 자녀에게 '엄마 아빠의 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화된 힘이였다. 어머니와 딸의 공적언어의 장으로의 출현은 어머니가 딸에게 상처를 재해석 해주는 존재의 저항적인 실천이다. 이는 어머니가 '고통을 말하 모두 생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과정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성적 억압의 구체적인 장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먼저 중심을 세워야, 내 아이한테 뭐 사회성이니, 성의식이니 이런걸 넣줄수 있지, 내가 아파한테 복종,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에 복종하는 모습과 사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이면서, 이걸 이렇다 라고 이해를 못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많은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 만큼. 몸도 마음도 다 지쳤지만, -사례 G

[세상을 얻으셨네요. -연구자]

예, 예. 맞아요. -사례 G

어머니는 법과의 담론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례 G가 얻은 것은 이 사회 제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이익이 아니다. 어머니가 얻은 것은 주요하게는 '고통'이다. '그 고통'은 법언어에 있어 하나의 '사투리'(Butler,2000)이다. 어머니는 딸의 성폭력에 대한 방언의 말하기를 수행하면서(Butler,1997) 남성 권력을 수행하는 법 언어의 경계에 틈새를 만든다. 어머니의 고통은 폭력에 대한 대항 언어로서 의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고통에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눈에 딸이 포착되고 어머니는 성적 억압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한 번더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법과의 담론 대결을 통해 가부장제의 여성억압 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사례의 어머니의 말처럼, 딸의 성폭력을 고소한 어머니들은 가부장제에서 무언가를 얻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부장제의 법적 공간에서 법의 남성중심성을 문제시하여 여성차별적인 경계를 흔들어 얻은 여성들의 공간일 것이다.

V. 결론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성은 사적영역의 관계 내에서 이야기되어져 왔다. 주로 가부장제 재생산에 대한 제도적 모성에 대한 비판과 사회구성체의 발전에 따라 달라지는 모성의 변화를 가족 내에 제한하여 말하여왔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흔히 모녀관계는 친밀함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만일 모성이 공적 영역에서 실천되거나 친밀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모녀관계는 하나의 일탈이고 오염된 것으로 치부된다. 즉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모성의 실천과 모녀관계는 규범으로서의 모성과 모녀관계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추상적인 것인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모성을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다. 사회적인 자원활동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고 하는 일련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들은 그 가치에 대해 이견들을 남기면서 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어머니와 딸이 성을 둘러싸고 발생한 문제, 게다가 가부장제의 원동력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담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모두 “누가 물어보면 고소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아이만 치료하고’ 즉 사적 영역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머니들의 말 속에 이미 존재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적확하고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은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대안을 지적함에도 어떠한 결점이 없을 정도였다.

지난 2003년 12월 18일자로 공개된 ‘제5차 신상공개 명단’에서 볼 수 있듯이 2년간 270명 이상의 어머니가 고소하고 기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했다. 경찰서 수사과 형사의 책상에서 거부되는 신고까지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아동의 성폭력에 대해 공적영역으로의 말하기를 시도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가해자의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과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공적언어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자 한 어머니들이 없었기 때

문에 아동성폭력이 사적 영역에서 논의 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행위를 의미 짓는 일을 해야 하는 여성주의자들에게 자기비판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어머니들은 고소과정 속에서 공적 영역의 언어가 남성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인 여성과 아이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함을 비판한다. 비록 고소과정 2년에 가해자는 10개월의 형을 받았고 수치스러운 낙인이 다시 되돌아왔다고 하지만 그 낙인은 추상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낙인은 분명한 가부장제 사회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소 과정을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사회적 시스템의 지원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낙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적영역에 사건화가 모든 어머니를 모든 말하기 주체로 만들고 모든 피해자로서의 딸을 모든 생존자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아니다. 말하기 주체의 의미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말하기’를 통해 ‘말하기 어려움의 정치적 실천적 문제들’을 인식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비판의식은 성폭력의 연속선의 의미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 연속선-이 연속선은 연속선을 인식하게 된 주체의 행위성을 포착하지 못했다. -의 다른 효과인 성폭력의 일상적인 통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일상적인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신뢰받을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한 사고는 사적 영역 안에서만 의미지워지던 모성을 공적으로 확대시킨다.

다시 말해, 여성 자신의 고통을 ‘남성의 욕망’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으로 말하는 생존자의 말하기 효과에 관한 것이다. 고통에 관해 말하는 것이 상처 입은 여성이 가부장제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말해질 때 여성은 상처 속에서만 묶여있지 않고 자신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제도의 장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이 의사소통되지 않음을 인식한 어머니는 대안적인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설립을 제안한다. 가부장적 가족가치와 규범의 압력을 극복하고 어린이성폭력의 피해를 공적영역에서 문제제기 하기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도의 전문화를 통해 아동성폭력피해자들의 말하기 창구를 여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지적하고 있는 보호시스템은 '말하기'의 고통을 줄이는 하나의 도구역할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점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아동성폭력 피해가족의 어머니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고찰과 분석은 이 논문의 논점을 벗어나 있다. 그 고통은 범죄의 공격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도 너무나 다양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친부일 경우와 이웃의 누군가일 때, 피해의 정도가 추행일 때와 강간일 때, 피해의 지속성과 사건 당시 부모의 아동과의 거리(집안에서의 강도강간일 경우)등에 따라 각각 상이한 고통이 있고 그 분석의 방법도 달라진다. 위의 사안들은 한 논문에서 다루기에도 어렵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성폭력 사건이 자신이 아닌 딸에게 발생했으나 이 사회를 살아온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고통 특히 '말할 수 없음'을 담고, 딸의 어머니로서 '고소과정에 들어간' 어머니의 모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또 한 가지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아들의 성폭력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아들에 관한 사항은 좀 더 다른 방식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만 13세 미만의 남자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피해의 사건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번 제5차 '청소년대상성범죄분석 및 통계 자료'를 보면, 13세 미만의 남자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20건이다. 이러한 자료가 최근 들어 남자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가 늘고 있다는 근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최근에 어린 아이들의 성을 둘러싼 인권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진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어린이의 경우 피해아동의 부모는 '내 아이가 남자에라서 더 상처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다. 이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폭력 사건을 드러내 사건화 하는 것이 여전히 성별성을 내포한 제한적 인권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여성에 대한 비하와 혹은 혐오적인 감정으로 아이의 피해를 의미화해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나이가 어려

도 내 자식이 그래도 '남자'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딸의 성폭력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여성주의적 의미는 아직 본 연구자로서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논의는 본 논문의 논외로 한다.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강경아 (1996), "고통(Suffering)개념분석과 개발-혼종모형(Hybrid Model)방법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제2권 제2호
- 김은실 (2000), 「인권·문화·여성: 여성인권을 논하기 위한 문화비판서론」,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현실》 44 (2000), pp.
- _____(2000), "정서적 주체로서의 한국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모성과 모성체험을 중심으로-",
- _____(1995), "공사영역에 대한 여성인류학의 문제제기: 비교문화적 논쟁", 여성학논집 제13집.
- 김선옥 (1995), "공·사영역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여성학논집 제13집.
- 김신현경 (1997),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욕망과 폭력 '사이'?", 여성과사회 9호
- 김진옥 (1997), "살로트 브론테의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근대 영미소설 제4집
- 노영주 (2001), "이혼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6권 2호, pp43-63
- 다이안 맥도넬 (1992), 답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임상훈 옮김
- 문소정 (1997), "여성운동과 모성담론" 여성학연구 제 7권, pp47-64
- 미셸루코의 (1995), "정체성 정치와 성적 자유,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황정미 편역, 새물결.
- 박희경 (2001), 모성의 사회적 확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페미니즘 연구 창간호
- _____(2001), "독일 현대 여성소설 속에 나타난 모녀관계-엘프리데 예리넥의 소설 '피아노 치는 여자'를 중심으로", 독일문학, 제 85집
- 배지선 (2003), "성폭력" 개념 확장과 '성폭력' 경험 인식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 박숙자, 손승영, 조명덕, 조은 편역 (1995), 가족과 성의 정치학, 사회비평사

- 반성폭력세미나팀 (2002), "나로부터 살아남은 자아: 트라우마, 기억, 정체성", 소통과 전망 3
- 박신규 (1992), "딸의 체험을 통해 본 모녀관계의 성격과 변화", 이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변혜정 (1999), "페미니스트 지식으로서 S. Harding의 '강한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주의 인식론(1999-1학기 여성학연구보고) 자료집, 미간행.
- 신경아 (1998),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90년대 모성의 변화", 여성과사회 제9호, pp159-180
- 손봉호 (1995),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대출판사
- 심영희 외 (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여성학 제 5집
- 손승아 (1999),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기술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13권 2호
- 송선향 (2002), "형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충북대 형사법 무전공 석사논문
- 안동현 외 (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정신건강연구 제6집
- 안수진 (2002), 「성별화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연구 - 구애형 스토킹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택림 (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 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권 2호 pp79-117
- 이연정 (1996), "여성의시각에서 본 모성"이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 임옥희 (1994), "토니 모리슨: 기억과 욕망의 서사-재즈와 소중환 사람들",
- 유수진 (2002), "아동기 성학대가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성학대특성, 대처방법, 부모지지를 중심으로" 이대사회학과 석사논문
- 이영분 (1999), "아동성폭력 현황 및 그 치료와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8호
- 윤택림 (1994), "기억에서 역사로-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 이영분 (1999), "아동 성폭력 현황 및 그 치료와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8호
- 이재경 (1997),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족", 「가족철학: 남성철학과 여성경험의 만남」,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제15권 2호.
- 정희진 (2003), 「인권, 보편성과 특수성의 딜레마: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인권」, 한국여성의전화 기획, 정희진 위 음,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235-251.
- _____(2000), "아내폭력 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조성숙 (1986). "모성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활자매체자료를 중심으로" 이대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 장(윤)필화 (1999), 『여성/몸/성』, 또하나의 문화.
- _____(1995), "아시아의 가부장제와公私 영역 연구의 의미", 여성학논집 제 13집.
- 최유경 (2001), "유아교육기관의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 최은경 (2001). "언어 없이 말하기, 세월을 통해 본 성폭력 경험", 여성과 사회 8호
- 최미선 (1994). "가부장제 사회의 모녀관계에 대한 고찰", 이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 최희경 (1993). "페미니스트 인식론 연구", 이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태혜숙 (2000). "혹인 여성문학에서의 '몸'-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와 술라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제46권 1호 pp243-263
- 한영희 (2001). "기업의 광고전략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모성담론의 분석", 이대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 한인영 (1996), "성 학대 피해 아동과 그들의 모에 대한 사회사업 개입의 예", 한국아동복지학 4호.
-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 (2001),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 12권 제1호
- 허라금 (1995), "서구 정치사상에서의公私개념과 가부장적 성차별성", 여성학논집 제13집.
- _____(2000), "몸으로 다시 꾸며보는 여성 주체",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편, 1989, 『철학대사전』, 동녘.

@외국문헌

- Arendt, Hannah (1996).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태정호(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 _____(1999). *on violence*, 김정환(역) 『폭력의 세기』, 이후.
- Angelique Hinds & Laurence S. Baaskin (1999), "Child Sexual Abuse: What the Urologist Needs to Know", in *The Journal of Urology*, Vol. 162, 516-523
- Atwood, Margaret (1985), *The Handmaid's Tale*, 김선행 역 (1990), 『시녀이야기』, 문학사상사
- Brownmiller, Susan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일월서각편집부 위음,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 Bruce E. Mapes(1995). "Child Eyewitness Testimony In Sexual Abuse Investigations, Brandon, Vt. : Clinical Psychology Pub. Co., c1995
- Bouvier, Paul (2003), "Child sexual abuse : vicious circles of fate or paths to resilience?", in *Lancet*, vol.361 Issue 9356, p446, p2
- Bruce E. Mapes (1995). *CHILD EYEWITNESS TESTIMONY IN SEXUAL ABUSE INVESTIGATIONS*
- Butler, Judith (1993), *Bodies That Matter*, 김윤상(2003) 역, 『의미를 재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 _____(2000). "Antigone's Claim ; kinship between life and death", *Antigone's Claim*, Columbia University.
- _____(1997), *Excitable speech :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Routledge
- _____(1993), *imitation and Gender, Trouble, in Lesbian and Gay's Reader*
- _____(1990), "freud and the melancholia of the gender", in *Gender Trouble :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eledge.
- Caruth, Cathy (1996).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 Cameron, Deborah, *Feminism and linguistic theory*, 태혜숙(1995)역, 페미니즘과 언어이론
- Diana E.H.Russell (1984), *Sexual Exploitation*, SAGE Publication, Inc.

Diquinzio, Patrice (1993), "Exclusion and Essentialism in Feminist Theory : The Problem of Mothering", *Hypatia* vol. 8, no.3

Droisen, Audrey (1989), "Child sexual abuse : feminist perspectives",

Driver, Emily & Droisen, Audrey (1989), "Introduction" in *Child Sexual Abuse*, MACMILLAN EDUCATION LTD.

Dauphin, Cecile (), *De la violence et des femmes*, 이은민 역(2002), 『폭력과 여성들』, 동문선.

Glenn, Evelyn Nakano & Chang, & Forcey, Linda Rennie (1994), "Prat I", *Mothering Ideology: Experience, and Agency*, Routledge.

Haraway, Donna J. (1991), "Situated Knowledge: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in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Routledge.

Humm, Maggie (1989), *The Dictionary of Feminist Theory*, 심정순, 임경숙(1995) 역, 『페미니즘 이론 사전』, 삼신각

Jaggar M. Alison (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공미혜 · 이한옥 역, 『여성해방론과 여성 본성』, 이론과 실천.

Kelly, Liz(1988), "It's happened to so many women' : sexual violence as a continuum(1), in *SURVIVING SEXUAL VIOLENCE*, Polity Press.

_____(1988), "It's everywhere' : sexual violence as a continuum(2), in *SURVIVING SEXUAL VIOLENCE*, Polity Press.

Kleinman, Arthur & Das, Veena(2002). 사회적 고통; 인간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 의학적 · 문화인류학적 연구

Koedt, Anne (1972), "THE MYTH OF THE VAGINAL ORGASM", from A.Koedt, *Radical Feminism*, New York: Quadrangle .

Mackinnin, Catharine A. (1989), "Rape: on coercion and consent" in *Toward a Feminist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71-183; 엄용희 역(2001a), 「강간: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 한울, pp. 56-77.

Pateman, Carole (1998), *The Sexual Contract*, Oxford: Polity Press; 이충훈 · 유영근 역 (2001), 「남

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Rich, Adrienne Cecile (1976), *Of women born :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김인성 역(1996),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평민사.

Spivak, Gayatri,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in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Basingstoke, Hampshire : Macmillan.

Walby, Silvia (1990), *Theorizing Patriarchy*, 유희정 역, (199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Weeks, J. (1986), *Sexualit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서동진, 채규형 역 (1994),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서울: 현실문화연구.

◎ 자료집

구성동부아파트 성범죄 처벌대책위원회 (2001), <밝은 세상> 1,2,3호, 구성동부아파트 성범죄 처벌대책위원회 주최.

_____(2002), <밝은 세상> 4호, 구성동부아파트성범죄 처벌대책위원회 주최. 내일신문 (2002), <미즈엔> 77호, 내일신문 발행.

_____(2001), <미즈엔> 54호, 내일 신문 발행.

아동성폭력피해자가족모임(2002),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아동성폭력피해자가족모임 주최.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3차 신상공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

_____(200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4차 신상공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

_____(200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5차 신상공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

_____(200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 5차 신상공개 명단> 공개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자료집, 한국 성폭력상담소 주최

_____(2003),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법무연수원 (200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공개 자료.

@ 사이트

법무부 <http://www.moj.go.kr/>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아동성폭력피해자부모모임 <http://www.wesayno.or.kr/>

여성부 <http://www.moge.go.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h_main/h_main.asp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ABSTRACT

Study on mother's 'speaking'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in the process of a lawsuit

Jeong, Myung Hee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e thesis focuses on the personal experiences of mothers whose daughters have ever been invaded sexually. The mothers used to reproduce patriarchal ideas in daily lives either willingly or unwillingly. From that time of sexual attack against their daughters on, however, they start to resist the patriarchal system itself and hold to rebellious motherhood.

The mothers participating in the interviews make an extreme effort to bring the sexually abused experiences of their daughters to court officially. One thing the mothers can do to prove damages on their daughters, in the process of the suits, is 'speaking victimization'. When it comes to verbalizing children's damage, it gives severe agony and metal pain to their mothers in various layers. The statements concerning

victimization the mothers make must fit in five W's and one H (who, what, when, why, where, and how) and be made according to the legal terms in order to get cross to lawyers. Then the mothers are frustrated for lack of women's language. Not as much as this, they are quite disappointed in the fact that there is few professional institutions, professionals to file a petition for children sexually abused.

Furthermore, the mothers who have suffered all through in the investigations find and point out that the patriarchy of laws gives a hard time the most. They confess they did not recognize so patriarchal a law, before facing a law system in person, and undergo the male adult-centered law while they come to expand the scope to criticize the entire society.

My research explores as below:

First of all, the mothers of sexually victimized daughters criticize a law on its male-oriented and patriarchal system in the process of suits. Since the lack of investigating system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social relationship and sexuality of young girls, what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state is easily denied and hardly accepted in court. The mothers whose daughters are sexually attacked by their biological fathers also rebut the patriarchal law unwilling to punish the assaulters.

Secondly, the mothers suffer from the fact that they do not have languages enough to verbalize their pain and that of

their daughters. They learn from their suits that the law is not in their side, nor able to understand their anguish spoken by themselves, nor trying to do so. They rather realize nothing but men's language is acceptable in public communications.

Thirdly, the mothers learn from lawsuits the dualism of chastity dividing into either pure bodies or contaminated ones is false while seeing their children continue to exist and make a normal life on a daily basis even after such a hardship. They argue that the binary division of female bodies based on chastity is unable to negate their daughters' lives.

Lastly, when the mothers struggle with the legal system for raising questions on sexual violence, they get the hold of speaking not as the identity of mothers but as that of 'female mothers'.

The mothers, thereby, who have already gone through resisting and fighting in the legal processes and obtain and exercise the resistant motherhood on their own are not only the victimized children's mothers but also their 'female mothers' as contemporaries sharing the experiences of women with their daughters. As it were, their experiences give an insight into a breakthrough identity being female mothers in Korean society.